

중소기업 활용

수출유망품목 원산지결정기준 해설 핸드북



관세청
Korea Customs Service



국제원산지정보원
Korea Institute of Origin Information

중소기업 활용

수출유망품목 원산지결정기준 해설 핸드북



관세청
Korea Customs Service



국제원산지정보원
Korea Institute of Origin Information

발 간 사

우리나라는 최근 한-중미 FTA에 정식 서명하며, 既 체결된 한-칠레, 한-페루, 한-콜롬비아 FTA에 이어 중남미 시장 개척을 위한 본격적인 네트워크를 완성하였습니다.

FTA는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철폐함으로써 우리 제품의 경쟁력을 높이고, 경제 영토를 세계시장으로 넓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5년 한-중국, 베트남, 뉴질랜드 FTA와 2016년 한-콜롬비아 FTA 발효로, 총 52개국과 15개 FTA를 체결한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FTA 선진국으로 발돋움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 발효될 한-중미 FTA는 우리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협정별로 상이한 원산지결정기준과 복잡한 원산지 규정으로 인해 FTA 전문 인력이 부족한 우리 중소기업들은 FTA 활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이에 따라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우리나라의 既체결 FTA의 원산지결정기준을 해설한 「수출유망품목 원산지결정기준 해설 핸드북」을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既체결된 협정들의 수출입 동향과 FTA 활용률을 분석하여 도출한 우리나라 중소기업 수출유망 20대 품목을 수록하였습니다. 특히, 해당 품목별로 원산지결정기준을 상세히 해설하여 중소기업들의 FTA에 대한 이해와 활용 접근성을 높이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책자가 우리 기업들에게 FTA 활용의 핵심인 원산지 결정기준을 이해하는 데에 유용한 자료가 되기를 기대하며, 관세청은 기업들의 FTA 활용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7. 12.

관세청 자유무역협정기획관 김 재 일

CONTENTS

FTA 원산지결정기준 기본용어 쉽게 이해하기	7
FTA 활용 단계별로 이해하기	10

I 기업규모별 수출입 동향 및 활용률 분석

1. 기업규모별 수출입 동향	14
2. 한국이 既체결한 FTA 수출 활용률	18

II 수출유망품목 원산지결정기준 해설

1. 수출유망품목 선정	22
2. 수출유망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 해설	23

III FTA 활용 가이드

1. FTA 활용관련 애로사항 상담내용	72
2. 협정별 FTA 활용 가이드	75

FTA 원산지결정기준 기본용어 쉽게 이해하기

1. 원산지결정기준

물품의 원산지 판단을 위해 적용되는 기준으로, 크게 일반기준(General Rules)과 품목별 기준(PSR, Product Specific Rules)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양자 모두 충족을 해야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받게 된다. 특히,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PSR)은 일반적으로 HS코드 6단위별로 그 기준을 달리 규정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가공공정기준 등이 있다.

2. 완전생산기준(WO, Wholly Obtained Criterion)

어떤 물품의 모든 생산과정이 협정이 정하는 영역 내에서 이루어진 경우 적용되는 원산지결정기준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한 국가에서 전적으로 획득된 상품”은 해당 국가를 원산지로 간주한다. 농축수산물이나 광산물에 주로 적용된다.

3. 세번변경기준(CTC,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Criter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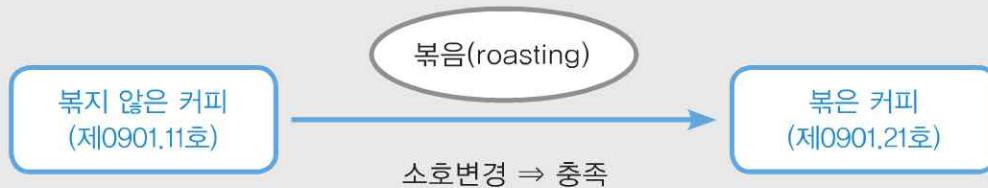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 될 때, 해당 물품의 품목번호와 해당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재료의 품목번호가 일정단위 이상이 다른 경우 해당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 **2단위 세번변경기준(CC, Change of Chapter)** : 투입된 비원산지 원재료의 HS코드와 완제품의 HS코드를 비교하여 앞의 2단위(류, Chapter)가 변하면 원산지를 인정하는 방식
-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 Change of Tariff Heading)** : 투입된 비원산지 원재료의 HS코드와 완제품의 HS코드를 비교하여 앞의 4단위(호, Heading)가 변하면 원산지를 인정하는 방식
- **6단위 세번변경기준(CTSH, Change of Tariff Sub-Heading)** : 투입된 비원산지 원재료의 HS코드와 완제품의 HS코드를 비교하여 앞의 6단위(소호, Sub-Heading)가 변하면 원산지를 인정하는 방식

【6단위 세번변경기준(CTSH : Change of Tariff Sub-Heading) 사례】

- 볶은 커피(제0901.21호) : 한-미 FTA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0901.2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역외산 제0901.11호의 볶지 않은 커피를 수입하여 역내에서 제0901.21호의 볶은 커피를 생산한 경우, 6단위 세번이 변경되므로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된다.

4. 역내부가가치기준(RVC, Regional Value Contents)

물품의 원산지를 판단하기 위해 완제품의 전체 가치 중에서 협정당사국에서 창출된 부가가치가 일정수준 이상이면 그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부가가치를 산출하는 계산방법에는 공제법(BD, Build-down Method), 집적법(BU, Build-up Method), 순원가법(NC, Net cost Method) 등이 있다.

【공제법(BD, Build-down Method) 사례】

- 가정용 믹서기(제8509.40호) : 한-중 FTA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완제품 FOB 가격	₩35,000	원산지결정기준	부가가치기준(RVC40) 선택
------------	---------	---------	------------------

【원재료 명세 및 가격구성표】

NO.	재료명	품목번호	단가	소요량	가격	원산지
1	모터 ASS'Y	8501.10	₩15,000	1 EA	₩15,000	일본(역외산)
2	본체 케이스	8509.90	₩3,000	1 EA	₩3,000	한국

3	PCB	8534.00	₩300	2 EA	₩600	미국(역외산)
4	커터	8208.30	₩200	1 EA	₩200	일본(역외산)
5	컵 ASS'Y	8509.90	₩7,000	1 EA	₩7,000	한국

$$\text{역내부가가치비율 (공제법)} = \frac{\text{본선인도가격} - \text{비원산지재료의 가격}}{\text{본선인도가격}} \times 100$$

$$\text{부가가치비율 계산결과} = \frac{35,000 - 15,800(15,000+600+200)}{35,000} \times 100 = 54.86\%$$

본선인도가격(FOB)는 ₩35,000, 비원산지재료비는 총 ₩15,800으로 부가가치비율 계산결과 40%이상의 역내부가가치(54.86%)가 발생하였으므로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된다.

5. 가공공정기준 (SP, Specific Processing Operation Criterion)

협정에서 규정한 특정한 공정을 당해국에서 수행해야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하는 기준이다. 세번변경기준이나 부가가치기준에 비하여 적용되는 품목의 범위가 좁은 편이고 주로 섬유류나 화학제품, 석유제품 등에 채택되어 있다.

6. 선택기준 및 조합기준

선택기준은 두 가지 이상의 기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말하며 조합기준은 두 가지 이상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을 말한다.



FTA활용 단계별로 이해하기

① 적용가능 FTA 협정 확인

FTA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협정이 '발효'되어야 협정의 내용이 효력을 발한다. 따라서 '타결' 단계의 협정은 '발효'가 되기 전까지는 FTA를 활용할 수 없다.

② 수출물품의 품목분류

품목분류는 물품에 HS코드를 부여하는 것으로 제품의 HS코드에 따라 양허 관세율 및 원산지결정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 FTA 활용의 첫 단계로서 이를 잘못 수행하면 이후 원산지 판단 및 FTA 업무에 중대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특히 세번변경 기준이 적용되는 물품은 투입 원재료의 HS코드도 정확히 확인하여야 한다.

③ 물품의 양허대상 여부 및 관세율 확인

발효된 협정상 해당 물품이 양허대상인지 또는 어느 정도 관세가 경감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일부품목은 양허대상에서 제외시키거나 관세 인하율이 미미한 경우도 있다. 그리고 양허되는 품목이라 하더라도 점진적으로 관세율이 양허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해당 연도에 적용될 세율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④ 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확인

FTA는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되기 위한 원산지 규정을 두고 있다. 원산지 규정은 크게 여러 품목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기준'과 특정품목에 대하여 적용되는 '품목별 기준'으로 나뉜다.

품목별 기준은 협정별 또는 물품별(HS코드 6단위 기준)로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활용하고자 하는 협정과 물품별로 정확하게 확인하여야 한다.

⑤ 원산지 증빙서류의 준비

원산지증빙서류란 '원산지상품'으로 판정받기 위한 근거 서류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원산지소명서, 제조공정도, 자재명세서, 원산지(포괄)확인서, 국내제조(포괄)확인서, 제조원가계산서 등의 증빙서류가 요구된다.

⑥ 물품의 원산지 판정

원산지 판정은 대상물품의 생산과 관련된 정보(투입원재료 내역, 원재료의 HS코드, 원재료 및 상품의 가격, 원재료의 원산지지위, 제조공정 등)를 바탕으로 해당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말한다.

⑦ 원산지증명서(확인서) 발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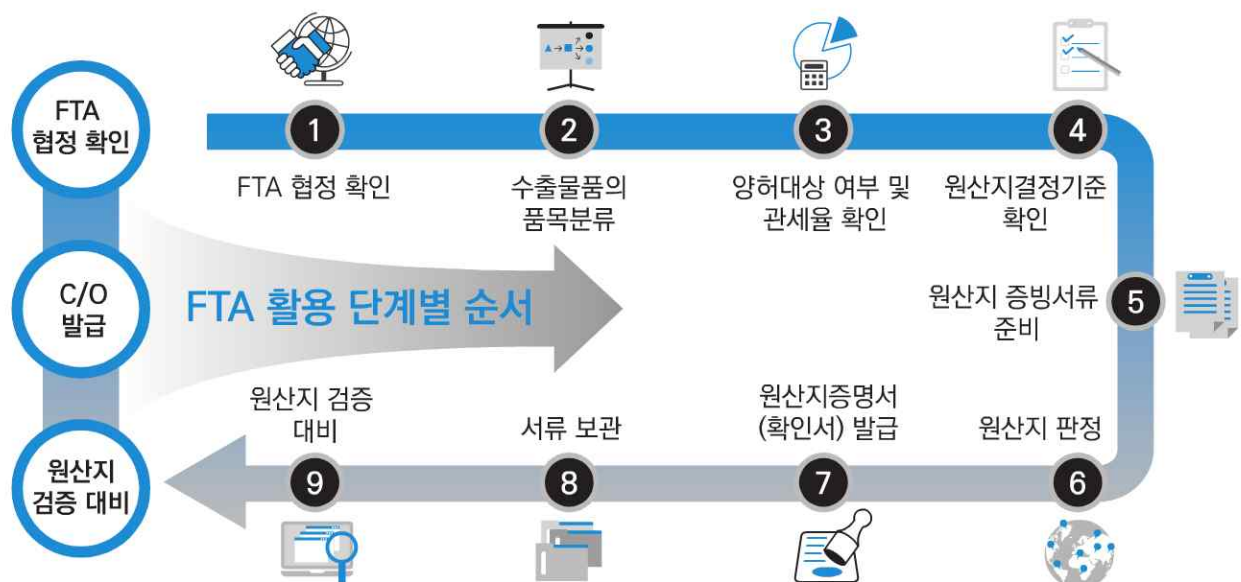
원산지 판단 결과 원산지결정기준이 충족된 물품은 각 협정에서 정한 방식에 따른 '원산지증명서(C/O, Certificate of Origin)'가 발급되어야 협정관세를 적용 받을 수 있다. 각 협정별로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및 양식 등이 상이하므로 이에 주의가 필요하다. 단, 국내에서 거래되는 원산지 물품은 원산지증명서가 아닌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발급한다.

⑧ 관련 서류보관

원산지 증명서 발급이 완료되면 원산지 판정 자료 및 증명서 발급관련 자료를 증명일 또는 작성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원산지 검증에 대비하여야 한다.

⑨ 원산지 검증 대응

원산지 검증이란 협정 또는 국내법에서 정한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는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거나 위반자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하는 일련의 행정절차를 의미한다. 따라서 피검증자는 원산지를 입증하기 위해 협정 및 국내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보관하였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I

기업규모별 수출입 동향 및 활용률 분석

1. 기업규모별 수출입 동향
2. 한국이 既체결한 FTA 수출 활용률



I. 기업규모별 수출입 동향 및 활용률 분석

중소기업 맞춤 FTA 수출 유망품목을 선정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수출 현황 및 FTA 수출 활용률을 점검하고 중소기업의 주력 수출 산업 및 제품을 살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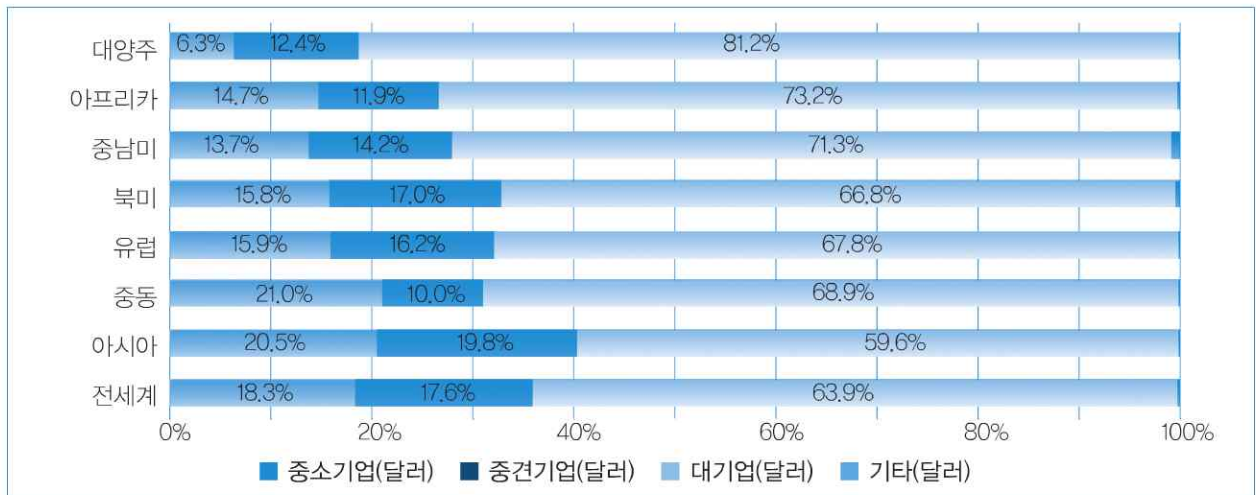
1. 기업 규모별 수출입 동향

(1) 대륙별 기업 규모에 따른 수출규모 및 비중

2015년 한국의 총 수출액 약 5천3백억 달러 중에서 18.3%인 9백6십억 달러를 중소기업이, 17.6%인 9백2십억 달러를 중견기업이, 63.9%인 3천4백억 달러를 대기업이 수출하였다. 대륙별로는 아시아가 총 수출액의 56.3%인 2천9백억 달러로 가장 많은 수출을 하였고, 다음으로 북미가 총 수출액의 14.1%인 7백4십억 달러, 유럽이 12.6%인 6백6십억 달러를 수출하였다.

대륙별로 가장 많은 수출을 하고 있는 지역인 아시아의 경우, 전체 수출액 중 21%인 6백억을 중소기업이, 20%인 5백8십억을 중견기업이, 60%인 1천7백억 달러를 대기업이 수출하고 있다. 7개 지역으로 구분한 대륙별 분포에서 아시아가 21.0%로 중동 다음으로 중소기업의 비중이 높지만, 실제 수출액과 중견기업 비율까지 고려한다면 중동을 제외한 아시아 지역의 중소기업 수출 규모와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수출규모가 큰 유럽과 북미의 중소기업 비중이 각각 15.9%와 15.8%로 높게 나타났다.

【대륙별 기업 규모에 따른 수출비중 비교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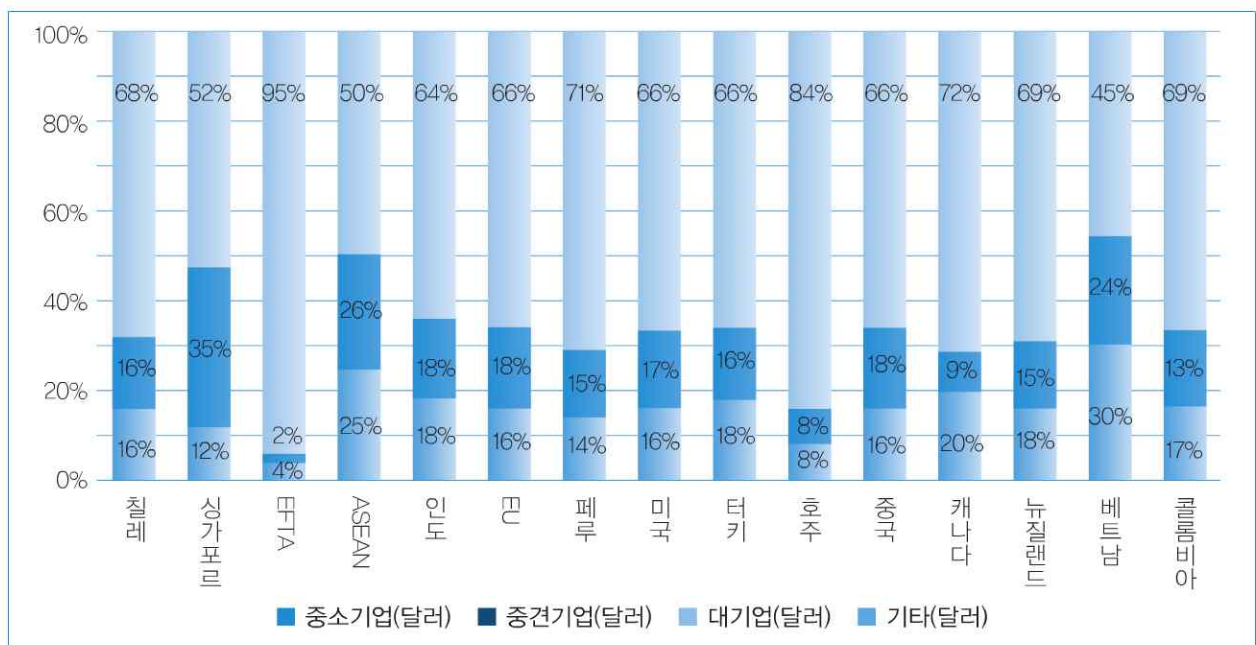


자료 : KOSIS 국가통계포털 (kosis.kr)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2) FTA 협정별 기업규모에 따른 수출비중

2015년 한국이 既체결한 15개 FTA 협정별 총 수출액은 한-중, 한-ASEAN, 한-미, 한-EU FTA 순으로 많았으며, 이와 비슷하게 협정별 중소기업의 총 수출액은 한-중, 한-ASEAN, 한-미, 한-베트남, 한-EU FTA 순으로 많았다.

【FTA 협정별 기업 규모에 따른 수출비중 비교 (2015)】



자료: KOSIS 국가통계포털 (kosis.kr)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한국이 既체결한 15개의 FTA 협정별 기업규모에 따른 수출 비중을 살펴보면, 한-베트남 FTA의 중소기업 비중이 3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한-ASEAN FTA가 25%, 한-캐나다 FTA가 20%, 한-인도 및 한-터키 FTA가 모두 18%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3) 산업별 기업규모 분포 및 수출 비중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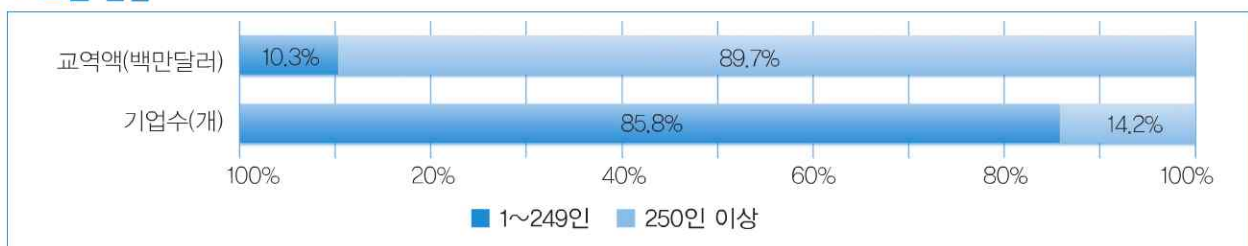
〈농업·임업 및 어업 생산물〉과 〈식료품·음료 및 담배〉 및 〈직물·의류 및 가죽제품〉 산업의 경우 모든 산업을 대상으로 한 250인 미만의 기업 비중인 85.5%보다 높았고, 이들의 수출비중도 모든 산업을 대상으로 한 10.3%보다 높았다.

〈농업·임업 및 어업 생산물〉 산업의 경우 전체 기업수의 88.8%를 차지하는 250인 미만의 기업이 총 수출액의 73.4%를 수출하고 있으며, 〈식료품·음료 및 담배〉 및 〈직물·의류 및 가죽제품〉 산업의 경우 전체 기업수의 87.9%를 차지하는 250인 미만의 기업이 총 수출액의 45.8%를 수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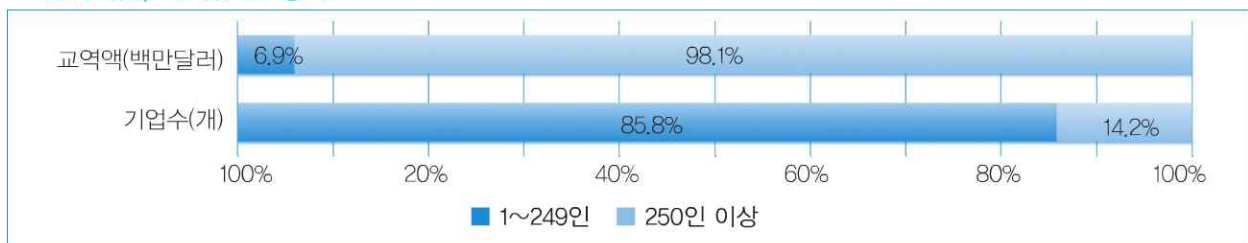
〈농업·임업 및 어업 생산물〉과 〈식료품·음료 및 담배〉 및 〈직물·의류 및 가죽제품〉 산업의 경우 기업의 수 및 교역액은 다른 산업의 비해 적어도 250인 미만의 기업수의 비중 및 이들의 교역액 비중은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 기업규모 분포 및 수출비중 비교 (2015)】

■ 모든 산업



■ 금속제품, 기계류 및 장비



■ 농업, 임업 및 어업 생산물 종사자 규모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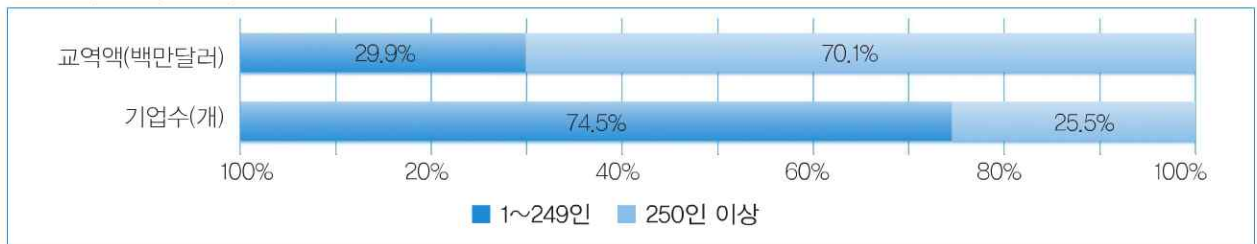
■ 기타 운송 가능한 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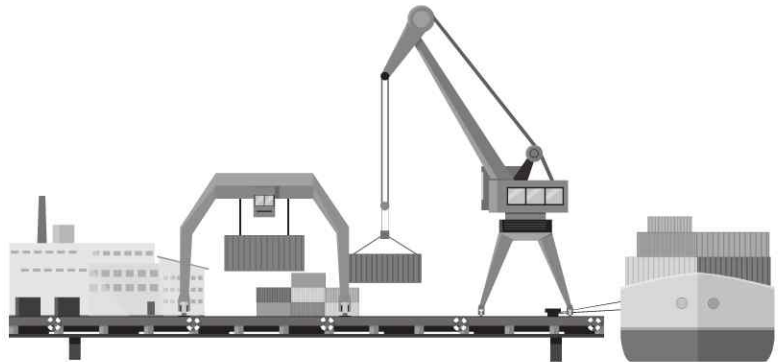
■ 식음료, 담배 및 직물, 의류, 가죽제품



■ 광석, 광물, 전기, 가스 및 수도



자료: KOSIS 국가통계포털 (kosis.kr)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2. 한국이 既체결한 FTA 수출 활용률

앞서 살펴본 내용을 근거로 중소기업의 수출 비중이 높은 FTA 협정 및 산업의 FTA 수출 활용률을 살펴보았다.

(1) 협정별 FTA 수출 활용률

한국이 既체결한 15개 FTA의 2016년 평균 FTA 수출 활용률은 63%이다. 63%의 평균보다 낮은 활용률을 보이는 협정은 한-ASEAN(52.3%), 한-중(33.9%), 한-뉴질랜드(31.8%), 한-베트남(36.9%), 한-콜롬비아(17.4%) FTA이다. 한-ASEAN을 제외하면 가장 최근에 타결된 4개의 FTA가 매우 낮은 FTA 수출 활용률을 보이는 셈이다.

특히, 중소기업의 수출 기업 수 비중 및 수출액 비중이 높은 한-중, 한-베트남, 한-ASEAN FTA는 평균을 밑도는 저조한 활용률을 나타내고 있다.

【협정별 FTA 수출 활용률 비교】

	칠레	EFTA	아세안	인도	EU	페루	미국	터키	호주	캐나다
2013	78.9	80.3	36.4	43.2	85.6	91.9	77.0	69.4	—	—
2014	80.5	79.6	37.0	56.3	85.3	90.5	76.2	72.7	—	—
2015	80.7	80.4	42.5	62.4	85.3	83.6	79.1	79.1	69.7	79.9
2016	78.6	80.4	52.3	65.8	84.8	83.3	75.6	80.4	77.4	89.1

자료: KOSIS 국가통계포털 (kosis.kr)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단위 %)

(2) 산업별 FTA 수출 활용률

관세청이 발표한 2016년 산업별 FTA 수출 활용률을 살펴보면, 섬유류(45.9%), 생활용품(48.1%), 농림수산물(50.8%), 전자전기제품(51.1%) 산업의 FTA 수출 활용률이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제품들의 한-중, 한-베트남, 한-ASEAN FTA 수출 활용률은 훨씬 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섬유 산업의 경우, 한-중 FTA는 21.6%, 한-베트남 FTA는 29.1%, 한-ASEAN FTA는 34.6%를 나타내며, 한-미 FTA의 74.1%, 한-EU FTA의 85.9%와 대조적인 결과를 보여주었다. 생활용품의 경우, 한-EU FTA의 수출 활용률 73.6%를 제외하고는 한-중 FTA 17.4%, 한-베트남 FTA 26.3%, 한-ASEAN FTA 43.8%를 비롯해 거의 모든 협정에서 저조한 활용률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250인 미만의 수출기업 수 비중 및 수출액 비중이 높은 <농업·임업 및 어업 생산물>과 <식품품·음료 및 담배> 및 <직물·의류 및 가죽제품> 산업의 FTA 수출 활용률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 FTA 수출 활용률 비교 (2015)

품목별	2015	2016
광물성 생산품	86.9	61.7
차량 등 수송기기 관련 물품	85.6	83.2
플라스틱 및 고무제품	80.6	78.9
동식물성 유지 등	66.9	60.6
비(卑)금속과 제품	65.9	71.2
화학공업 생산품	62.9	58.5
석·도자제품·유리 제품 등	61.9	58.9
기계류와 전기기기 등	64.0	68.3
잡품	61.6	60.9
방직용 섬유와 제품	56.7	49.9
펄프, 종이, 종이제품 등	45.9	31.5
조제식품 등	53.9	54.5
무기·총포탄 등	56.0	63.7
정밀기기 등	50.3	58.5
목재, 나무 제품 등	42.2	60.0
식물성 생산품	48.4	62.2
신발류·모자류 등	43.6	47.6
가죽 및 가죽제품 등	38.4	39.9
산 동물과 동물성 생산품	33.5	42.5
귀석, 귀금속 및 신변장식용품 등	35.8	51.7
예술품·수집품과 골동품	0.0	0.0

자료 : KOSIS 국가통계포털 (kosis.kr)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단위 %)

II

수출유망품목 원산지결정기준 해설

1. 수출유망품목 선정
2. 수출유망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 해설



Ⅱ. 수출유망품목 원산지결정기준 해설

1. 수출유망품목 선정

한국이 既체결한 14개의(한-EFTA 제외¹⁾) FTA 협정별 HS 6단위 품목에 대해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정량적 기준을 바탕으로 종합순위를 산출하여 FTA별 수출 유망 품목을 선정하였다.

정량적 기준으로 한국의 수출역량(MCA, 수출증가율), 수입시장 여건(시장점유율), FTA 무역장벽 효과(관세인하 폭) 등의 순위를 평균한 종합 순위가 사용되었다.

【수출유망품목 선정기준】

한국의 수출역량	시장비교우위지수(MCA)
	FTA 발효 전후 1년간의 수출액 변화
수입시장 여건	한국의 현지국 수입시장 점유율
FTA 무역 장벽효과	FTA에 따른 관세인하 폭

【FTA별 수출유망품목 종합순위 산출방법】

$$0.25*[\text{시장비교우위지수 순위}] + 0.25*[\text{수출액 변화 순위}] \\ + 0.25*[\text{수입점유율 순위}] + 0.25*[\text{관세인하 폭 순위}]$$

정량적 기준 외에도 한국이 既체결한 FTA 협정별 수출 활용률을 비교분석하기 위해 다수의 FTA 협정에서 공통적으로 상위 랭크된 품목을 선별하되, 중소기업의 수출 비중이 높은 산업 군에 속해 있는 품목들인지도 고려하였다.

2012년 HS 6단위 기준 5,221개 품목 중 각 협정별 종합순위 상위 3%인 품목은 150여 개이며, 이중 중소기업의 수출 비중이 높은 식료품, 화학, 플라스틱, 섬유, 식물·편물, 공구·기계, 잡품관련 산업 군에서 다수의 FTA 협정에서 공통적으로 상위 랭크된 20대 품목을 선발하였다.

1) EFTA 국가들의 활용가능한 관세율 자료가 없어 수출유망품목 선정 시 제외되었다.

2. 수출유망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 해설

1. FTA별 수출유망품목 종합순위 산출
2. 다수 협정에서 종합순위 상위 3% 안에 랭크된 20개 품목 선정

【중소기업을 위한 20대 수출유망품목 list】

산업	품목 번호	대표 상품	종합순위가 상위에 랭크된 협정들				
식료품	1902.30	인스턴트라면	미국	뉴질랜드	중국	ASEAN	베트남
	2103.90	된장	미국	뉴질랜드	캐나다	베트남	EU
	2202.90	알로에 음료	콜롬비아	미국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화학	2917.35	무수프탈산	호주	터키	칠레	콜롬비아	미국
	3212.10	열 전사지	터키	미국	베트남	칠레	중국
	3506.10	접착제	호주	터키	칠레	캐나다	ASEAN
플라스틱	3902.10	폴리프로필렌	칠레	터키	미국	EU	ASEAN
	3918.10	PVC 타일	콜롬비아	미국	호주	터키	캐나다
	3919.10	접착테이프	호주	EU	터키	콜롬비아	베트남
섬유	5407.72	합성필라멘트 염색 직물	베트남	ASEAN	EU	미국	터키
	5408.22	재생·반(半)합성 필라멘트의 염색 직물	칠레	터키	미국	페루	EU
	5516.22	인조필라멘트와 혼방한 재생·반(半)합성 스테이플섬유의 염색직물	베트남	칠레	콜롬비아	미국	터키
직물/편물	5903.20	폴리우레탄 직물	페루	베트남	EU	뉴질랜드	터키
	6001.10	롱파일 편물	EU	베트남	미국	터키	ASEAN
	6307.10	청소포	뉴질랜드	베트남	중국	페루	ASEAN
공구기계	8303.00	금고	뉴질랜드	호주	칠레	EU	ASEAN
	8481.80	밸브	칠레	콜롬비아	미국	베트남	호주
	8537.10	터치패널	베트남	칠레	미국	ASEAN	터키
잡품	6805.30	연마 제품	ASEAN	인도	중국	터키	EU
	9405.40	LED 램프	콜롬비아	EU	인도	베트남	중국

1	인스턴트 라면				
물류정보		산 업		식료품	
		상품명		인스턴트 라면	
		품 명		1902	파스타와 쿠스쿠스
				30	그 밖의 파스타
	주요 원재료	플레이크	상품 코드		세부 품명
			0712	90	건조 당근
			0712	90	건조 파
			0712	90	건조 양배추
			0712	90	건조 무
			0712	39	건조 버섯
			0904	22	건 고추 조각
		스프	상품 코드		세부 품명
			2501	00	소금(식염)
			2922	42	L-글루탐산나트륨
			2106	90	HVP(식물단백질 가수분해물)
			1701	99	설탕
			2106	90	인공조미료
			0712	20	양파가루
			0712	90	마늘가루
			0904	12	후춧가루
			1511	90	팜유
			0712	90	무 가루
			2918	18	사과산
			0712	90	파프리카추출색소
		면	상품 코드		세부 품명
			1101	00	밀가루
			1511	90	팜유
			3505	10	변성전분
			2501	00	소금(식염)

매개변수	주요 원재료	면	1108	13	감자전분		
			1302	32	구아검		
			1507	90	대두유		
			1702	90	당액		
			2905	39	D-소르비톨액		
			2905	39	폴리글리세린지방산에스텔		
			2923	20	레시틴		
			2836	20	탄산나트륨		
			2836	40	탄산칼륨		
			2835	39	피로인산나트륨		
			2936	23	리보플라빈		
			2918	14	시트르산		
			주요 제조과정	주요 제조공정도		원료 혼합 및 반죽 - 제면 - 호화 - 유탕 - 냉각 - 포장	
	①	원료 혼합 및 반죽		밀가루, 정제수, 변성전분, 감자전분, 소금, 팜유, 구아검 등의 원재료를 혼합하여 반죽			
	②	제면		반죽된 것을 압연하여 면대 형성			
	③	호화		면대를 스팀BOX에 통과하여 면을 증숙			
	④	유탕		식물성 팜유에 면을 유탕			
	⑤	냉각		유탕된 면을 40도 온도에서 냉각			
	⑥	포장		유탕면과 플레이크/스프 반제품을 함께 포장 [스프 : 소금, 인공조미료, 설탕, 각종 야채가루, 후추가루 등을 혼합] [플레이크 : 당근, 파, 양배추, 무, 버섯, 고추 등 세척된 야채들을 절단, 건조하여 혼합]			

FTA 활용정보	협정	수출액	활용률	MFN	특혜세율	원산지결정기준
	미국	47,789	72.0	6.4	0.0	CC
	뉴질랜드	4,018	63.2	5.0	0.0	CTH
	중국	1,241	12.6	15.0	12.7	CC
	ASEAN	41,008	57.3	7.0	0.0	CTH or RVC(40)
	베트남	8,479	38.0	33.8	2.5	CTH or RVC(40)

단위 : 천 달러, %

주 : 1. FTA 활용정보 항목은 2016년 기준으로 작성, 세율의 경우 체약상대국의 HS 6단위 기준 평균세율

2. 아세안 세율의 경우 각 체약상대국별 수출규모가 가장 큰 국가(말레이시아)의 HS 6단위 평균세율 적용

FTA 활용방안 분석

해당 물품의 일반적인 주요 원재료 및 제조공정을 고려해 보았을 때, 2단위 세번변경기준과 4단위 세번변경기준 충족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한-ASEAN 및 한-베트남 FTA에서의 선택기준으로서 부가가치기준은 별도로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우선 제시된 각 원재료들은 모두 완제품인 제1902호와 상이한 세번(제0712호, 제1101호, 제2106호, 제2501호 등)으로 분류됨에 따라 세번변경기준 충족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다. 즉, 모든 원재료들을 수입하여 제조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충분한 가공을 거치는 경우 원산지결정기준을 어렵지 않게 충족할 수 있다.

다만, 해당물품의 핵심 원재료인 면(제1902호)을 수입하여 우리나라에서 유탕처리 후 플레이크, 스프 등과 포장되어 수출되는 경우에는 2단위 세번변경기준뿐만 아니라 4단위 세번변경기준도 불충족하게 될 수 있다. 그러나 해당물품에 대한 일반적인 제조공정상 면(제1902호)은 대부분 밀가루, 팜유 등 원재료를 수입하여 생산하므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낮아 보인다.



2		된 장				
매립제조면		산 업		식료품		
		상품명		된장		
		품 명	2103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겨자의 고운 가루 · 거친 가루와 조제한 겨자	
				90	장류	
	주요 원재료	상품 코드		세부 품명		
		1101	00	밀가루		
		1201	90	대두		
		2201	90	정제수		
		2207	20	알코올(주정)		
		2501	00	소금		
	주요 제조공정	주요 제조공정도		Steaming - 발효 - 숙성 - 포장		
		①	Steaming	대두에 증기를 가해 찌냄		
		②	발효	찐 콩에 효모를 첨가해 발효		
		③	숙성	발효된 콩에 소금, 정제수를 섞어 약 50일 동안 숙성		
		④	포장	숙성이 완료되면 겨자가루, 주정 등을 혼합한 뒤 포장		
FTA 활용정보	협정	수출액	활용률	MFN	특혜세율	원산지결정기준
	미국	40,191	62.2	5.3	0.0	CTH
	뉴질랜드	1,258	38.9	5.0	0.0	CTSH or RVC(35)
	캐나다	4,477	69.4	9.5	5.7	CC ex from 1201
	베트남	5,698	36.7	28.3	5.0	CTH or RVC(40)
	EU	6,390	63.1	3.9	0.0	CTH(any)

단위 : 천 달러, %

주 : FTA 활용정보 항목은 2016년 기준으로 작성, 세율의 경우 체약상대국의 HS 6단위 기준 평균세율

FTA 활용방안 분석

제2103.90호에 분류되는 된장은 제조공법에 따라 투입되는 원재료가 다르기는 하나 일반적으로 대두(제1201호)를 주 원재료로 하여 밀가루(제1101호), 소금(제2501호), 정제수(제2201호), 주정(제2207호) 등으로 구성된다. 주요 제조공정으로는 「원료 혼합 -

Steaming – 발효 – 숙성 – 포장」의 과정으로 이루어지며 물품에 따라 기타 향미증진제 등의 식품첨가제 등이 투입되기도 한다.

해당물품에 대하여 선정된 협정 중 우리나라가 주로 수출하는 국가는 미국으로서 4천만 달러를 상회하는 수출규모를 보이고 있는 반면, 기타 EU, 베트남, 캐나다 등으로의 수출은 약 1백만 달러에서 6백만 달러로 나타나 對미 수출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산지결정기준은 전 협정에서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세부적으로는 미국과 EU가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 단일기준을, 뉴질랜드의 경우 6단위 세번변경기준(CTSH)과 부가가치기준의 선택기준, 캐나다는 제1201호를 제외한 2단위 세번변경기준(CC ex from 1201), 베트남의 경우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과 부가가치기준의 선택기준으로 다양한 것으로 나타나 각 협정간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물품의 일반적인 주요 원재료 및 제조공정 그리고 완제품의 세번(제2103.90호)을 고려해 보았을 때, 대부분의 협정에 제시된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는 데는 모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제시된 각 원재료들은 모두 완제품인 제2103.90호와 상이한 세번(제1101호, 제1201호, 제2201호 등)으로 분류됨에 따라 2·4·6단위 세번변경기준 충족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다. 즉, 우리나라가 주로 수입하는 기초원재료인 대두, 밀가루 등의 주요 원재료들을 모두 수입하여 제조한다고 하더라도 역내에서 충분한 가공을 거치는 경우 원산지결정기준을 어렵지 않게 충족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한-캐나다 FTA의 경우 원산지결정기준을 CC(ex from 1201)로 규정하고 있어 제1201호에 분류되는 대두를 반드시 역내산을 사용해야만 하므로 한-캐나다 FTA활용에 있어서는 이 점을 유의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즉, 제1201호에 분류되는 원재료인 대두는 한국산을 사용해야 하며 한국산을 사용할 수 없다면 캐나다산을 사용하여 누적기준을 활용하여 FTA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현재 69.4%의 양호한 한-캐나다 FTA 활용률을 볼 때 對캐나다 수출업체들은 이러한 원산지결정기준을 잘 이해하고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알로에 음료				
물품정보		산업		식료품		
		상품명		알로에 음료		
		품명	2202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	
				90	기타	
	주요 원재료	상품 코드		세부 품명		
		2201	10	물(정제수)		
		2008	99	알로에베라겔		
		1701	99	정백당(백설탕)		
		1702	60	액상과당		
		2918	14	시트르산(구연산)		
		2918	15	구연산나트륨		
		3302	10	알로에향		
		2918	11	젖산칼슘		
		2936	27	비타민C		
1301		90	젤란검			
주요 제조과정	주요 제조공정도		원료투입 - 배합 · 균질 - 살균 · 충전			
	①	원료투입	물, 알로에베라겔, 설탕, 액상과당, 구연산, 구연산나트륨, 젖산칼슘, 젤란검, 알로에향 등의 원료 투입			
	②	배합 · 균질	투입된 원료를 혼합 및 균질(균일하게 배합하는 공정)			
	③	살균 · 충전	전처리 살균 · 냉각 후 제품 충전			
FTA 활용정보	협정	수출액	활용률	MFN	특혜세율	원산지결정기준
	콜롬비아	2,282	0.0	15.0	0.0	CTH ex from 04, 1211.20, 1302.19
	미국	69,279	63.5	17.3	0.0	CC ex from 0805, 2009, juice concentrates of 2106.90
	호주	5,238	51.8	5.0	0.0	CTH ex from 1211.20, 1302.19
	뉴질랜드	3,169	36.5	5.0	0.0	CTH ex from 1211.20 or from ginseng products of 1302.19
	베트남	14,675	54.0	5.0	5.0	RVC 40(ex from 1211.20, 1302.19)

단위 : 천 달러, %

주 : FTA 활용정보 항목은 2016년 기준으로 작성, 세율의 경우 체약상대국의 HS 6단위 기준 평균세율

FTA 활용방안 분석

해당 물품의 일반적인 주요 원재료 및 제조공정 그리고 완제품의 세번(제2202.90호)을 고려해 보았을 때, 대부분의 협정에 제시된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는 데는 모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제시된 주요 원재료들은 대부분 완제품인 제2202.90호와 상이한 세번(제2201호, 제2008호, 제1701호, 제1702호 등)에 분류됨에 따라 4단위 세번변경기준 충족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주요 원재료 중 제2201호(물)의 경우 한-미 FTA 적용 상 2단위 세번변경기준(CC)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역내산을 사용하여야 하나 일반적인 제조공정을 고려해보았을 때 물을 수입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극히 제한적이므로 이를 고려해야 할 상황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부분의 협정에서 제외 세번으로 정하여 반드시 역내산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제1211.20호의 인삼과 제1302.19호의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인삼 추출물 포함)은 해당 제품 제조에는 사용되지 않는 물품으로 고려대상이 될 수 없고, 한-미 FTA 상 원산지결정기준에서의 제외 세번인 제0805호, 제2009호 및 제2106.90호의 농축주스 또한 해당 물품의 제조에 사용되지 않으므로 이 또한 고려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해당 ‘알로에 음료’의 원산지결정기준은 단순히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의 단일기준으로 판단해도 무방하고 주요 원재료 및 제조공정상 충분히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타 협정에 비해 활용률이 저조한 한-콜롬비아, 한-뉴질랜드 FTA의 경우 우리 수출업체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콜롬비아의 경우 MFN세율이 평균 15%, 협정세율이 0%이므로 FTA활용을 통한 관세절감 혜택으로 수출경쟁력 확보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한-베트남 FTA의 경우 특이하게 부가가치기준과 일정품목(제1211.20호 및 제1302.19호)의 완전생산기준을 충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전술한 바와 같이, 제1211.20호 및 제1302.19호의 경우에는 해당제품의 원재료로 사용되지 않으므로 고려할 필요가 없고 따라서 역내 부가가치가 40%이상만 발생하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

다만, 한-베트남 FTA에서는 집적법과 공제법 둘 중 유리한 부가가치기준 계산식을 선택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므로 원산지재료비와 비원산지재료비의 비율을 고려하여 원산지재료비 비중이 높은 경우 집적법을, 원산지재료비의 비율은 낮으나 가공비·제조간접비·판매비·이익 등이 높은 경우에는 공제법을 선택하는 것이 부가가치비율을 상승시키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4		무수프탈산				
물품정보		산업	화학			
		상품명	무수프탈산			
		품명	2917		폴리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無水物) · 할로겐화물 · 과산화물 · 과산화산,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 · 니트로소화유도체	
				35	무수프탈산	
	주요 원재료	상품 코드		세부 품명		
		2902	41	오르토크실렌		
	주요 제조과정	주요 제조공정도		원료 투입 및 산화 반응 - 증류 - 완제품 회수		
①		원료 투입 및 산화반응	반응기에 예열된 공기와 오르토크실렌을 혼합한 뒤 촉매를 사용하여 공기의 산화반응을 일으킴			
②		증류	증류 단계를 거쳐 순수한 무수프탈산을 얻음			
FTA 활용정보	협정	수출액	활용률	MFN	특혜세율	원산지결정기준
	호주	2,636	0.0	5.0	0.0	CTSH
	터키	6,365	0.1	6.5	0.0	[CTH + MC(20) of non originating materials of the same heading] or MC(50)
	칠레	3,544	0.0	6.0	0.0	CTH or BD(45)/BU(30)
	콜롬비아	2,064	0.0	15.0	9.5	CTSH
	미국	2,810	18.3	6.5	0.0	CTH

단위 : 천 달러, %

주 : FTA 활용정보 항목은 2016년 기준으로 작성, 세율의 경우 체약상대국의 HS 6단위 기준 평균세율

FTA 활용방안 분석

제2917.35호에 분류되는 무수프탈산은 일반적으로 오르토크실렌(제2902호)이라는 원재료 하나를 바탕으로 공기와 산화반응 시킨 후 증류를 통해 제조되므로 원재료 구성이 매우 간단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해당물품에 대하여 선정된 협정 중 우리나라가 주로 수출하는 국가는 터키로 약 6백만 달러의 수출규모를 보이고 있으며 기타 칠레, 미국, 호주, 콜롬비아 등으로의 수출은 약 2~3백만 달러로 전반적으로 수출금액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FTA 활용률과 관련하여서는 미국이 유일하게 18.3%의 활용률을 보이고 있었고 기타 협정들의 경우에는 FTA 활용률이 0~0.1%로 수출업체의 FTA 활용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해당 품목의 수출규모 자체가 전반적으로 작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해당 물품에 대한 계약상대국의 세율을 살펴보면, 호주, 터키, 칠레, 미국은 평균적으로 약 5~6%의 MFN세율을 적용하고 있고 콜롬비아의 경우 15.0%로 확인되어 상대적으로 고세율이 부과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해당 품목에 대한 한-콜롬비아 FTA 양허유형은 7단계 균등철폐품목으로 2016년 현재 9.5%의 협정세율이 적용되어 5.5%의 세율차를 보이고 있고 2022년에 완전철폐될 예정이다.

원산지결정기준은 전 협정에서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세부적으로는 호주와 콜롬비아가 6단위 세번변경기준(CTSH), 미국²⁾이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 터키와 칠레의 경우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과 부가가치기준의 선택기준으로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터키의 원산지결정기준의 경우 4단위 세번변경기준의 예외로서, '그 제품과 동일한 호의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2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도 사용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최소허용기준(10%)을 초과한 비원산지재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해당 물품의 원재료(제2902호)와 완제품의 세번(제2917호) 및 제조공정을 고려해 보았을 때, 선정된 협정에 제시된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는 데는 모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해당물품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는 제2902호에 분류되는 오르토크실렌(o-xylene)으로서 완제품인 제2917.35호와 6단위까지 상이하므로 4·6단위 세번변경기준 모두 쉽게 충족이 가능하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부가가치기준의 충족여부는 판단할 필요가 없어 해당 '무수프탈산'의 원산지결정기준은 단순히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의 단일기준으로 판단해도 무방하다.

이렇듯 해당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은 어렵지 않게 충족이 가능함에도 전반적으로 FTA 활용률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향후 수출업체들은 FTA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콜롬비아의 경우 MFN세율이 평균 15%로 높고 협정세율은 현재 9.5%이긴 하나 점차 단계적으로 인하되어 2022년 완전철폐될 예정이므로 수출경쟁력 향상을 위해 한-콜롬비아 FTA를 적극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2) 미국의 경우 한-미 FTA 품목별 기준 제6부 주 규정에 따라 각 규칙에 명시된 화학반응·정제 등 특정공정이 수행될 시에도 원산지상품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		열전사지					
매립용지정보		산업		화학			
		상품명		열 전사지			
		품명		3212		비수성 매질에 분산시킨 안료, 스탬프용 박,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염료와 그 밖의 착색제	
					10	스탬프용 박(箔)	
	주요 원재료	상품 코드		세부 품명			
		3920	62	PET 필름			
		3215	19	잉크			
		3204	19	염료			
		3824	99	착색제			
		3403	19	이형제			
		2902	30	톨루엔(용제)			
		2914	12	MEK(용제)			
		7607	11	알루미늄박			
		3506	91	접착제			
		3208	90	프라이머			
	주요 제조과정	주요 제조공정도		원단투입 - 이형제 코팅 - 잉크염료 코팅 - 착색제 코팅 - 증착 코팅 - 접착제 코팅 - 재단·검품·포장			
		①	원료투입	원단(PET 필름)을 제품 종류에 맞게 가공 후 인쇄 동판에 거치			
		②	이형제 코팅	투입 원단 뒷면에 이형제 코팅			
		③	잉크염료 코팅	잉크 및 염료를 용제(톨루엔, MEK등)와 배합 후 인쇄기를 통해 코팅			
		④	착색제 코팅	잉크 및 염료가 코팅된 원단에 착색제를 코팅			
		⑤	증착 코팅	착색제가 코팅된 원단 위에 알루미늄박으로 증착 코팅			
		⑥	접착제 코팅	증착 코팅된 원단에 프라이머를 코팅시킨 후 접착제를 코팅			
		⑦	재단·검품·포장	필요에 맞게 재단 후 검품 거친 뒤 포장			
FTA 활용정보	협정	수출액	활용률	MFN	특혜세율	원산지결정기준	
	터키	4,634	88.4	6.5	0.0	[CTH + MC(20) of non originating materials of the same heading] or MC(40)	
	미국	6,349	86.0	4.7	0.0	CC	
	베트남	38,013	1.3	3.0	0.0	CTH or RVC(40)	
	칠레	904	0.3	6.0	0.0	CTH or BD(45)/BU(30)	
	중국	14,667	10.4	15.0	12.0	CTH	

단위 : 천 달러, %

주 : FTA 활용정보 항목은 2016년 기준으로 작성, 세율의 경우 체약상대국의 HS 6단위 기준 평균세율

FTA 활용방안 분석

제3212.10호에 분류되는 열 전사지는 일반적으로 PET 필름(제2008호)에 잉크(제3215호), 염료(제3204호)를 접착제(제3506호) 등을 활용하여 결합, 시트상의 지지물에 부착시킨 물품을 말하며 주요 제조과정으로는 「원단투입 - 이형제 코팅 - 잉크·염료 코팅 - 착색제 코팅 - 증착 코팅 - 접착제 코팅 - 재단, 검품, 포장」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원산지결정기준은 전 협정에서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세부적으로는 터키, 베트남 및 칠레가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과 부가가치기준의 선택기준을, 미국이 2단위 세번변경기준(CC), 중국의 경우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터키의 원산지결정기준은 4단위 세번변경기준의 예외로서, '그 제품과 동일한 호의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2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도 사용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최소허용기준(10%)을 초과한 비원산지재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해당 물품의 일반적인 주요 원재료 및 제조과정 그리고 완제품의 세번(제3212.10호)을 고려해 보았을 때, 대부분의 협정에 제시된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제시된 주요 원재료들은 대부분 완제품인 제3212.10호와 상이한 세번(제3920호, 제3215호, 제3204호, 제3506호 등)에 분류됨에 따라 4단위 세번변경기준 충족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제시된 원재료 중 제3204호(염료), 제3208호(프라이머), 제3215호(잉크) 등의 경우 한-미 FTA 적용 상 2단위 세번변경기준(CC)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역내산 원재료를 사용하여야만 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물론, 한-미 FTA 제6부 주 규정에 따라 화학반응, 정제, 표준물질 등의 특정가공과정 수행 시에는 원산지상품으로 취급될 수 있으나 해당물품의 일반적인 원재료 및 제조공정을 고려해 보았을 때, 한-미 FTA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러한 공정이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주 규정을 적용하여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받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미 FTA를 활용하고 있는 기업에서는 제32류에 해당하는 원재료들에 대하여 한국산을 사용하거나 한국산을 사용할 수 없다면 미국산을 사용, 누적기준을 활용하여 FTA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현재 86.0%의 높은 FTA 활용률을 볼 때 對미 수출업체들은 이러한 원산지결정기준을 잘 이해하고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6	접착제					
 산업 화학 상품명 접착제 품명 3506 10 조제 글루(glue)와 그 밖의 조제 접착제 글루나 접착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품 [소매용으로 한 글루(glue)나 접착제로서, 순중량이 1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주요 원재료 주요 제조공정	상품 코드		세부 품명		
				원료 준비 - 배합 · 교반 - 포장		
				원료로서 안료, 에폭시 수지, 아민관능화합물, 탄산칼슘을 준비		
				준비된 원료들을 적정 비율로 배합하여 교반		
				교반되어 완성된 접착제를 포장		
	협정		수출액	활용률	MFN	특혜세율
	호주		3,323	89.8	5.0	0.0
	터키		2,205	86.0	6.5	0.0
	칠레		261	53.6	6.0	0.0
	캐나다		354	39.8	6.5	0.0
	ASEAN		5,304	12.9	14.0	5.0

단위 : 천 달러, %

주 : 1. FTA 활용정보 항목은 2016년 기준으로 작성, 세율의 경우 체약상대국의 HS 6단위 기준 평균세율

2. 아세안 세율의 경우 각 체약상대국별 수출규모가 가장 큰 국가(베트남)의 HS 6단위 평균세율 적용

FTA 활용방안 분석

제3506.10호에 분류되는 접착제는 일반적으로 에폭시수지 등으로 대표되는 플라스틱 수지(제39류)를 주 원재료로 하여 물품에 따라 각종 화학물질(제28류~제38류)을 배합, 접착력을 갖도록 제조된 물품으로서 주요 제조공정으로는 「원료준비 - 배합 · 교반 - 포장」의 비교적 단순한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해당 물품의 일반적인 주요 원재료 및 제조과정 그리고 완제품의 세번(제3506.10호)을 고려해 보았을 때, 선정된 협정에 제시된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위의 표에 제시된 주요 원재료들은 대부분 완제품인 제3506.10호와 상이한 세번(제3907호, 제3207호, 제2921호 등)에 분류됨에 따라 4단위 세번변경기준 충족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즉, 모든 주요 원재료들을 역외산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역내에서 충분한 가공만 이루어진다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FTA 활용을 통해 수출확대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와 관련하여 해당물품이 분류되는 제3506.10호는 접착제를 1킬로그램 이하의 소매포장한 물품을 분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아래의 표와 같은 제조공정을 통해 세번이 변경되었다면,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뿐만 아니라 역내에서 단순공정 이상의 ‘충분한 가공’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고려도 반드시 필요하다.

【단순 소매포장을 통한 제3506호로의 세번변경 사례】

품목번호	재료	→	공정	→	품목번호	제품
3501	카세인 글루(casein glue)		소매포장		3506.10	소매용 접착제
3503	그 밖의 동물성 글루(glue)					
3505	전분·덱스트린이나 그 밖의 변성전분을 기본 재료로 한 글루(glu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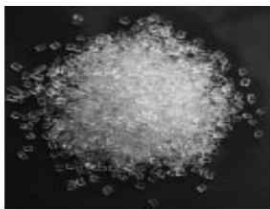
자료 : 관세율표

대부분의 협정에서는 단순포장³⁾을 불인정공정(최소공정)의 범위에 포함시켜 이러한 공정이 수행된 경우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충분한 가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아 원산지지위를 획득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다만, 해당물품(접착제)의 경우 튜브·용기 등에 소매포장하기 위해 특별한 포장설비·장비 등이 필요할 것이므로 불인정공정에 포함될 여지는 그다지 크지 않으나 유의하여야 할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한-호주 FTA에서는 제3501.90호의 카세인 글루(casein glue)와 제3503호의 동물성 글루(glue)는 반드시 역내산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어 이들을 역외국으로부터 수입하여 제3506.10호의 접착제를 생산할 시 원산지결정기준을 불충족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위에 제시된 협정 중 유일하게 한-캐나다 FTA의 경우에는 불인정공정 규정 자체가 없어 접착제를 단순히 소매포장만 해도 원산지 상품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게 되므로, 타 협정에 비해 보다 FTA 특혜관세 적용요건 충족이 쉽다고 볼 수 있다.

3) 터키, 아세안 FTA에서는 “단순한”이란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히 생산되거나 설치된 특별한 기술, 기계, 도구 또는 장비가 필요하지 아니하는 활동이라는 정의를 명시하고 있으나 칠레나 호주의 경우에는 “단순한”에 대한 정의가 없어 모든 주요공정과 실질가공여부를 각각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7		폴리프로필렌				
물 재 정 보		산업		플라스틱		
		상품명		폴리프로필렌		
		품 명	3902		프로필렌의 중합체나 그 외 올레핀의 중합체	
				10	폴리프로필렌	
	주요 원재료	상품 코드		세부 품명		
		2901	22	프로필렌		
		2901	21	에틸렌		
		2931	90	올레핀계 촉매		
		3815	19	티타늄 촉매		
		2931	90	알킬계 조촉매		
		2710	19	유동파라핀		
		3402	13	대전방지제		
		3812	39	산화방지제		
	주요 제조과정	주요 제조공정도		원료투입 - 중합 - 스티머 - 건조 - 제립 - 포장		
		①	원료투입	액상의 프로필렌을 반응기 아래쪽에 투입한 뒤, 에틸렌, 수소, 질소와 같은 부재료 및 촉매도 투입		
		②	중합	반응기 내부에서 기화된 프로필렌은 촉매 등과 반응하여 반응기 중간 부분에서 가루 상태로 회수		
		③	스티머	가루상태의 생성물에 스팀을 주입시켜 잔여물을 제거		
		④	건조	가열질소를 이용하여 건조시킨 뒤 중합체를 사일로에 저장		
		⑤	제립	대전방지제, 산화방지제 등 각종 첨가제를 투입한 뒤 압출기를 거쳐 펠릿 상태로 회수		
		⑥	포장	품질의 균일화를 위해 펠릿 상태의 폴리프로필렌을 고루 섞는 혼합 공정을 거친 뒤 포장		
F T A 활 용 정 보	협정	수출액	활용률	MFN	특혜세율	원산지결정기준
	칠레	3,352	89.6	6.0	0.0	CTH or RVC(45/30)
	터키	103,371	99.0	6.5	0.0	CTH or MC(25)
	미국	71,854	79.3	6.5	0.0	Other ⁴⁾
	EU	130,627	89.4	6.5	0.0	CTH or MC(25)
	ASEAN	13,792	89.4	3.0	0.0	CTH or RVC(40)

단위 : 천 달러, %

주 : 1. FTA 활용정보 항목은 2016년 기준으로 작성, 세율의 경우 체약상대국의 HS 6단위 기준 평균세율

2. 아세안 세율의 경우 각 체약상대국별 수출규모가 가장 큰 국가(베트남)의 HS 6단위 평균세율 적용

4)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3901호 내지 제3915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제3901호 내지 제3915호에 해당하는 원산지 구성중합체가 중량으로 전체 구성중합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FTA 활용방안 분석

해당 물품의 일반적인 주요 원재료 및 제조공정 그리고 완제품의 세번을 고려해 보았을 때, 대부분의 협정에 제시된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제시된 주요 원재료들은 대부분 완제품인 제3902.10호와 상이한 세번(제2901호, 제2931호, 제3402호, 제3812호 등)에 분류됨에 따라 4단위 세번변경기준 충족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중 한-미 FTA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세번변경기준에 더불어 역내산 중합체가 전체 구성중합체의 중량으로 50% 이상이어야만 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이러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원재료는 제3901호 내지 제3915호에 해당(제3902호 제외)하는 중합체로서 만약, 이들에 해당하는 중합체가 사용되어 해당물품이 생산되었다면 역외산 비중을 중량으로 50%미만으로 사용하여야만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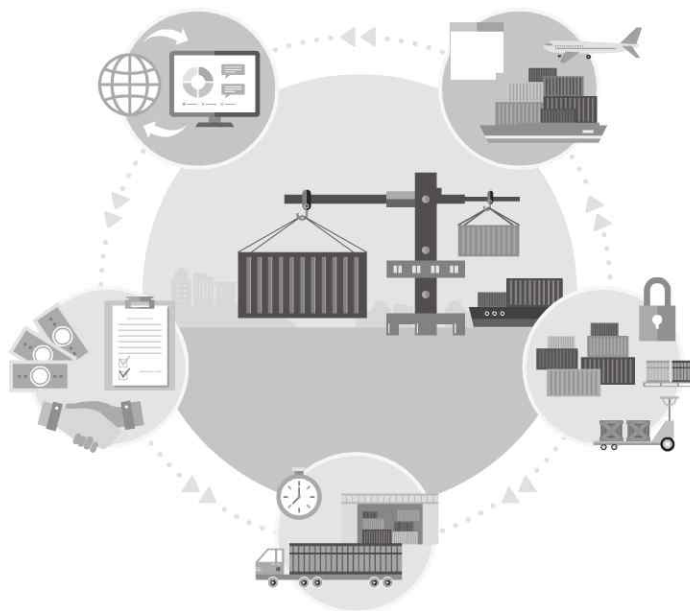
다만, 한-미 FTA 상 이러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제7부 주 규정을 적용하여 FTA 활용 여부를 검토할 수도 있다. 한-미 FTA 제7부의 품목별 기준에서는 화학반응, 혼합 및 배합 등의 특정가공공정 수행 시에는 원산지상품으로 취급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물품의 일반적인 원재료 및 제조공정을 고려해 보았을 때, 특히 한-미 FTA상 명시된 공정 중 화학반응이나 혼합의 공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 규정을 적용하여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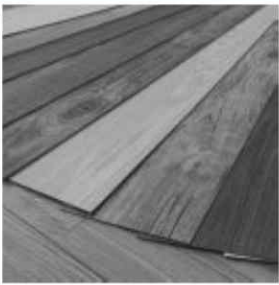
즉, 해당물품에 대하여 한-미 FTA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한-미 FTA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에 명시된 세번변경기준 등을 충족하거나 그렇지 않다면 주 규정에 명시된 각 규칙에 해당하는 공정 등의 조건을 충족할 시에도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수출업체는 이 중 유리한 규정을 취사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한-미 FTA 제7부 품목별 원산지 기준 주 규정 중 일부】

구분	제7부 플라스틱과 그 제품 및 고무와 그 제품 (제39류 - 제40류) 주 규정
주1	제7부의 규칙 1 내지 규칙 5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이 부의 류 또는 호에 해당하는 상품은 그러한 규칙에서 달리 명시된 것을 제외하고 원산지 상품으로 취급된다.
주2	주1에도 불구하고, 상품이 이 부의 원산지 기준에 명시된 적용가능한 세번변경기준 또는 적용가능한 역내부가가치를 충족할 경우 원산지 상품이다.
규칙 1	화학 반응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화학 반응의 결과로 생산된 제39류 및 제40류의 상품은 원산지 상품으로 취급된다. 이 부의 목적상, '화학 반응'이란 분자 내 결합이 깨지고 새로운 분자 내 결합 생성에 의하거나 분자에서 원자의 공간배열을 변경함으로써 새로운 구조를 가진 분자가 되는 공정(생화학 공정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음 사항들은 원산지 상품 여부를 결정하는 목적상, 화학반응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가. 물 또는 다른 용제에 용해 된 것 나. 용제(용매물을 포함한다)의 제거, 또는 다. 결정수의 첨가 또는 제거

자료 : 한-미 FTA 협정문.



8		PVC 타일				
매체비전과		산업		플라스틱		
		상품명		PVC 타일		
		품명		3918		플라스틱으로 만든 바닥 깔개, 벽 피복재나 천장 피복재
					10	염화비닐의 중합체로 만든 것
	주요 원재료	상품 코드		세부 품명		
		3904	10	PVC 레진		
		2917	33	가소제(오르토프탈산디노닐)		
		2530	90	경탄(천연탄산칼슘)		
		3812	39	안정제		
		3920	49	PVC 인쇄지		
	주요 제조공정	주요 제조공정도		배합압연 - 성형 - 합지 - 표면처리 · 코팅 - 검사 · 포장		
		①	배합 · 압연	PVC레진, 가소제, 탄산칼슘, 안정제 등을 배합 및 가압하여 GEL 상으로 가공		
		②	성형	GEL 상의 원료를 롤러를 통해 압착연신하여 시트상으로 제조		
		③	합지	제조된 시트 위에 인쇄지 합지		
		④	표면처리 · 코팅	합지된 시트 표면에 표면처리 및 코팅		
		⑤	검사 · 포장	크기에 맞게 재단 후 검사 거쳐 포장		
FTA 활용정보	협정	수출액	활용률	MFN	특혜세율	원산지결정기준
	콜롬비아	1,215	0.0	20.0	0.0	CTH
	미국	208,865	87.8	5.1	0.0	CTH
	호주	29,910	56.8	5.0	0.0	CTSH
	터키	3,532	93.7	6.5	0.0	CTH or MC(25)
	캐나다	25,169	79.7	6.5	4.3	CTH

단위 : 천 달러, %

주 : FTA 활용정보 항목은 2016년 기준으로 작성, 세율의 경우 체약상대국의 HS 6단위 기준 평균세율

FTA 활용방안 분석

제3918.10호에 분류되는 PVC(Poly Vinyl Chloride) 타일은 열가소성 플라스틱의 하나인 폴리염화비닐(제3904호)을 주 원재료로 한 바닥 깔개의 일종으로서, 기타 PVC인쇄지(제3920호), 가소제(제2917호), 안정제(제3812호)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제조공정으로는 「원료 배합 · 압연 - 성형 - 합지 - 표면처리 · 코팅 - 검사 · 포장」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해당 물품에 대한 체약상대국의 세율을 살펴보면, 미국, 호주, 터키, 캐나다는 평균적으로 약 5~6.5%의 MFN 세율을 적용하고 있고 콜롬비아의 경우에는 20.0%의 상당한 고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당 품목에 대한 특혜세율은 캐나다를 제외(2016년 현재 4.3%)하고 이미 0%로 수렴되어 있다.

한편, 원산지결정기준은 전 협정에서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호주가 타 협정의 일반적 기준인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을 채택하지 않고 6단위 세번변경기준(CTSH)를 채택하고 있었고 터키의 경우에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과 부가가치기준(MC25)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완화된 형태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제3918호의 경우 단 2개의 소호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3918.10호에 '염화비닐의 중합체로 만든 것'이 분류되고 제3918.90호에 '그 밖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을 분류토록 하여 재질별 분류에 따르고 있으므로, 제3918호 내에서의 6단위 세번변경은 사실상 발생할 수 없다. 이에 따라 6단위 세번변경기준과 4단위 세번변경기준은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으므로 한-호주 FTA에서만 여타 협정과 달리 6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채택한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다.

해당 물품의 일반적인 주요 원재료 및 제조공정 그리고 완제품의 세번을 고려해 보았을 때, 대부분의 협정에 제시된 세번변경기준은 쉽게 충족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제시된 주요 원재료들은 대부분 완제품인 제3918.10호와 상이한 세번(제3904호, 제2917호, 제3812호, 제3920호 등)에 분류되므로 4·6단위 세번변경기준 모두 충족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수출규모가 상당하고 세율차 및 원산지결정기준 등은 타 협정과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한-호주 FTA의 활용률이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으므로, 해당품목에 대한 對호주 수출업체들의 보다 적극적인 한-호주 FTA 활용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9		접착테이프					
대미배경정보		산업		플라스틱			
				접착테이프			
				3919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시트·필름·박(箔)·테이프·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	
		10	롤 모양인 것				
	주요 원재료	상품 코드		세부 품명			
		3920	43	PVC Sheet			
		3906	90	아크릴			
		3208	20	바니시(vernish)[래커(lacquer)를 포함한다]			
		3909	50	폴리우레탄 경화제			
		4811	90	이형지(박리지)			
		4822	90	지관			
	주요 제조공정	주요 제조공정도		점착제 도포 - 합지 - 숙성·권취 - 절단·포장			
		①	점착제 도포	이형지(박리지)에 경화제를 첨가한 아크릴점착제를 도포한 뒤 건조			
		②	합지	점착제가 도포된 이형지와 PVC 원단을 합지한 뒤 지관에 Roll형태로 권취			
		③	숙성·권취	권취된 반제품을 숙성 후 소분하여 재권취			
		④	절단·포장	크기에 맞게 절단 후 포장			
FTA 활용정보	협정	수출액	활용률	MFN	특혜세율	원산지결정기준	
	호주	1,202	74.7	5.0	0.0	CTH	
	EU	16,469	82.3	6.4	0.0	CTH or MC(25)	
	터키	1,964	89.5	6.4	0.0	CTH or MC(25)	
	콜롬비아	19	0.0	20.0	9.5	CTH	
	베트남	40,983	31.0	20.0	7.3	CTH or RVC(40)	

단위 : 천 달러, %

주 : FTA 활용정보 항목은 2016년 기준으로 작성, 세율의 경우 체약상대국의 HS 6단위 기준 평균세율

FTA 활용방안 분석

제3919.10호에 분류되는 접착테이프는 폴리염화비닐(제3904호) 등의 시트에 점착제를 도포한 테이프로 일반적으로 PVC시트(제3920호)에 제39류에 해당하는 플라스틱 수지(제3901호, 제3902호, 제3906호 등)를 바탕으로 한 점착제가 도포된 형태이다. 주요 제조공정으로는 「점착제 도포 - 합지 - 숙성·권취 - 절단·포장」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해당물품에 대하여 선정된 협정 중 우리나라가 주로 수출하는 국가는 베트남으로 약 4천만 달러를 상회하는 수출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그 뒤를 이어 EU(약 1천 6백만 달러)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터키, 호주의 경우 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출실적이 많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對콜롬비아 수출은 1만 9천 달러 정도로 극히 미미한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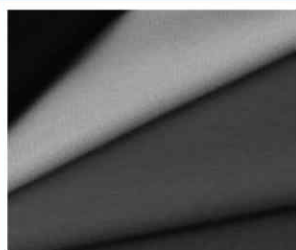
한편, 해당 물품에 대한 체약상대국의 세율을 살펴보면, 호주, EU, 터키는 평균적으로 약 5~6.4%의 MFN 세율을 적용하고 있고 콜롬비아와 베트남은 20.0%의 상당한 고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품목에 대한 특혜세율 또한 콜롬비아와 베트남은 각각 9.5%, 7.3%의 세율이 남아있고 기타 호주 등의 특혜세율은 이미 0%로 수렴되어 있다.

원산지결정기준은 전 협정에서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호주와 콜롬비아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 단일기준을 채택하고 있고 나머지 협정의 경우에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과 부가가치기준(MC25, RVC40)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완화된 형태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TA 활용률 측면에서는 가장 큰 수출규모를 보이고 있는 베트남이 31.0%로 저조한 활용률을 보이고 있었으나 기타 터키, EU, 호주 등은 각각 89.5%, 82.3%, 74.7%의 우수한 활용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베트남의 경우 수출규모 자체가 크고 MFN 세율과 특혜세율의 차이가 평균 12.7%의 큰 세율차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률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한-베트남 FTA 활용률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⁵⁾

해당 물품 또한 일반적인 주요 원재료 및 제조공정 그리고 완제품의 세번을 고려해 보았을 때, 대부분의 협정에 제시된 세번변경기준은 쉽게 충족될 것으로 보인다. 제시된 주요 원재료들은 대부분 완제품인 제3919.10호와 상이한 세번(제3920호, 제3906호, 제4811호 등)에 분류되는 것으로 확인되어 4단위 세번변경기준 충족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5) 해당품목의 한-아세안 FTA의 활용률 또한 39.5%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10		합성필라멘트 염색 직물				
물품정보		산업		섬유		
		상품명		합성필라멘트 염색 직물		
		품명	5407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	
				72	염색한 것	
	주요 원재료	상품 코드		세부 품명		
		5402	47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사		
		5402	45	나일론사		
		3204	11	염료		
	주요 제조과정	주요 제조공정도		제작 – 전처리 – 염색 – 건조 · 열처리 – 검사 · 포장		
		①	제작	경사로서 폴리에스테르사와 위사로서 나일론사를 배치하여 제작		
②		전처리	제작된 생지를 호발, 정련을 통해 불순물을 제거			
③		염색	염료를 배합하여 염색기를 통해 직물을 염색			
④		건조 · 열처리	수세(水洗) 후 젖은 직물을 건조하고 규격 안정화를 위해 마무리 열처리 시행			
⑤		검사 · 포장	불량 상태를 검사한 뒤 포장			
FTA 활용정보	협정	수출액	활용률	MFN	특혜세율	원산지결정기준
	베트남	23,515	21.2	40.0	0.0	CTH or RVC(40)
	ASEAN	15,651	31.0	40.0	0.0	CTH or RVC(40)
	EU	3,462	76.6	8.0	0.0	SP ⁶⁾
	미국	1,092	87.5	14.9	7.4	CC ex from 5106 – 5110, 5205, 5206, 5509, 5510
	터키	172	10.7	8.0	2.7	SP ⁷⁾

단위 : 천 달러, %

주 : 1. FTA 활용정보 항목은 2016년 기준으로 작성. 서울의 경우 체약상대국의 HS 6단위 기준 평균세율

2. 아세안 세율의 경우 각 체약상대국별 수출규모가 가장 큰 국가(베트남)의 HS 6단위 평균세율 적용

- 6) 1. 고무사를 넣은 것 : 단사로부터 생산된 것
2. 기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2-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부터 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가. 코이어사 나. 천연섬유 다. 인조스테이플섬유(카드, 코옴 또는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한 것을 제외한다)
라.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마. 종이
2-2. 날염작업과 이에 수반하는 최소한 두 가지 준비 또는 마무리 공정(정련, 표백, 머머서라이징, 열처리, 기모, 캘린더링, 방축가공, 영구마감처리, 데커타이징, 침투, 보수 및 벌링과 같은 것을 말한다)을 한 것. 다만, 날염되지 않은 비원산지 직물의 가격이 그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47.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 방직용 재료의 후환으로 제조된 상품과 관련된 특별조각이 경우 이 부의 주석 6 참조

FTA 활용방안 분석

제5407.72호에 분류되는 합성필라멘트의 염색직물은 주로 제5402호의 합성필라멘트사와 제5404호의 합성모노필라멘트를 주 원재료로 하여 제32류의 염료 등을 사용하여 염색·직조한 직물이며, 주요 제조과정으로는 「제직 - 전처리 - 염색 - 건조·열처리 - 검사·포장」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원산지결정기준은 베트남과 아세안이 4단위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의 선택기준을 채택하고 있고 미국은 조건부 2단위 세번변경기준(CC), EU와 터키의 경우 가공공정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다만, 미국의 경우 원산지결정기준을 2단위 세번변경기준으로 채택함에 따라 주요 원재료인 제54류에 해당하는 역외산 원사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결과적으로 사(Yarn)를 생산하는 공정인 방적공정이 역내에서 수행되어야만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할 있도록 하고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제54류의 사와 제5106호 내지 제5110호, 제5205호, 제5206호, 제5509호 및 제5510호를 혼방하여 직물을 제조할 시에도 이들 호에 해당하는 사들은 제외 세번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원산지제품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한편, EU의 경우에는 가공공정기준을 채택하고 있고 해당물품은 합성필라멘트의 염색직물이므로 화학재료, 즉 제39류에 해당하는 원재료로부터 사와 직물까지 생산되어야만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할 수 있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한-미 FTA 동일한 Yarn forward 기준이 적용된다.⁸⁾

해당 물품의 일반적인 주요 원재료 및 제조공정 그리고 완제품의 세번을 고려해 보았을 때 EU, 터키 및 미국의 원산지결정기준은 충족하기 쉽지 않은 반면, 베트남과 아세안의 원산지결정기준은 이에 비해 충족이 매우 쉬운 것으로 보인다. 제시된 주요 원재료는 제54류에 해당하는 원사들로, 한-EU 및 한-미 FTA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Yarn forward 규정에 따라 역내산을 사용해야만 하나 베트남과 아세안의 경우에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으로 역외산 원사를 사용하더라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 즉, 직물을 수입하여 염색가공만 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역외산 원사를 투입, 역내에서 제직공정을 거쳐 직물을 생산하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게 된다.

8) 제5407.72호에 대한 한-EU FTA 원산지결정기준 중 제2호의 경우 해당물품이 날염작업(Printing)이 수행되지 않으므로 적용할 수 없다.

11		재생 · 반(半)합성 필라멘트의 염색 직물					
물품정보			산업		섬유		
			상품명		재생 · 반(半)합성 필라멘트의 염색 직물		
			품 명		5408		재생 · 반(半)합성 필라멘트사의 직물
						22	염색한 것
	주요 원재료	상품 코드		세부 품명			
		5408	21	아세테이트 직물			
		3204	11	염료			
		3809	91	유연제			
	주요 제조공정	주요 제조공정도		원단 연폭 – 전처리 – 염색 – 건조 · 가공 – 검사 · 포장			
		①	원단 연폭	생지 상태의 원단을 해포(解布)하면서 다시 미싱하여 원단을 연속적으로 이어줌			
		②	전처리	생지를 호발, 정련을 통해 불순물 제거			
		③	염색	염료를 배합하여 염색기를 통해 직물 염색			
		④	건조 · 가공	수세(水洗) 후 젖은 직물을 건조하고 유연제 등으로 마감처리			
		⑤	검사 · 포장	불량 상태를 검사한 뒤 포장			
F T A 활용정보	협정	수출액	활용률	MFN	특혜세율	원산지결정기준	
	칠레	79	0.0	6.0	0.0	CC ex from 5106–5110, 5205, 5206, 5509, 5510	
	터키	4,092	93.1	8.0	2.7	SP ⁹⁾	
	미국	4,765	91.4	14.9	0.0	(CC ex from 5106–5110, 5205, 5206, 5509, 5510) or (CTSH from 5403.10, 5403.31, 5403.32, 5403.41)	
	페루	1	100.0	20.0	6.8	CTH or (RVC50+Printing or Dyeing)	
	EU	8,691	84.2	8.0	0.0	SP	

단위 : 천 달러, %

주 : FTA 활용정보 항목은 2016년 기준으로 작성, 세율의 경우 체약상대국의 HS 6단위 기준 평균세율

9) 해당물품의 한-EU 및 한-터키 FTA 원산지결정기준은 제5407.72호와 동일하므로 해당 부분을 참고하기 바람

FTA 활용방안 분석

제5408.22호에 분류되는 재생·반(半)합성 필라멘트의 염색 직물은 주로 제5403호 및 제5405호의 재생·반합성 필라멘트사 주 원재료로 하여 직물부터 제직하거나 또는 재생·반(半)합성 필라멘트의 직물을 제32류의 염료 등을 사용하여 염색한 직물이다. 제시된 원재료와 제조공정은 직물부터 조달하여 염색·가공하는 방식을 기준으로 한 물품으로 주요 제조공정으로는 「원단 연폭 - 전처리 - 염색 - 건조·가공 - 검사·포장」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해당 물품의 일반적인 주요 원재료 및 제조공정 그리고 완제품의 세번을 고려해 보았을 때 EU, 터키, 칠레 및 미국의 원산지결정기준은 충족하기 쉽지 않은 반면, 페루의 원산지결정기준은 이에 비해 충족이 매우 쉬운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제시된 주요 원재료는 제54류에 해당하는 직물로 한-EU 및 한-미 FTA 등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협정의 Yarn forward 규정에 따라 직물 자체가 원산지상품으로서의 지위를 획득해야만 한다. 즉, 제시된 원재료와 같이 제5408호의 원단을 바탕으로 염색직물을 제조할 시에는 해당 원단이 반드시 역내산이어야만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또한, 해당 제품이 만약 혼방직물인 경우에는 해당 직물 생산에 사용된 제5106호부터 제5110호, 제5205호 등의 제외 세번에 해당하는 원재료들은 반드시 역내산이 사용되어야만 한다.¹⁰⁾

다만, 한-미 FTA에서는 완제품(제5408.22호)과 원재료(제5403.10호, 제5403.31호 등)가 동일한 류에 속하여 2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명시된 세번의 비원산지재료로부터 해당 물품이 제조되는 경우에는 원산지상품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비원산지재료 사용이 가능한 제54류의 원재료는 아래의 표와 같다. 이에 따르면 비스코스레이온의 강력사, 단사(꼬임 횡수여부 상관없음), 그리고 복합사나 케이블사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반면, 초산셀룰로오스나 그 밖의 모든 사는 역외산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10) 한-EU FTA 협정상 쿼터는 17,805,290이고 물량 단위는 SME로 kg으로 환산 시 9.13SME/kg으로 적용

【제5403호의 소호 구성 및 한-미 FTA상 역외산 사용 인정여부】

HS.No		품명	한-미 FTA상 역외산 사용 인정여부
5403		재생 · 반(半)합성 필라멘트사[재봉사와 소매용은 제외하며, 67데시텍스 미만인 재생 · 반(半)합성 모노필라멘트를 포함한다]	—
	10	강력사[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으로 한정한다]	O
	3	그 밖의 실(단사)	—
	31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꼬임이 없거나, 꼬임이 미터당 120회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O
	32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꼬임이 미터당 120회 초과인 것으로 한정한다)	O
	33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X
	39	기타	X
	4	그 밖의 실[복합사(연합사)나 케이בל사]	—
	41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	O
	42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X
	49	기타	X

자료 : 관세율표 및 한-미 FTA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바탕으로 연구자 재구성.

또한, EU 및 터키의 경우 쿼터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제5408호 물품의 경우 EU의 경우 1,950 M/T, 터키는 200 M/T의 수량 내에서는 완화된 원산지결정기준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쿼터 소진은 선착순(first-come, first-served)으로 이루어지며 적용기간은 매년 7월 1일부터 다음해 6월 30일까지 1년 단위로 운영된다.

【제5408호의 쿼터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완화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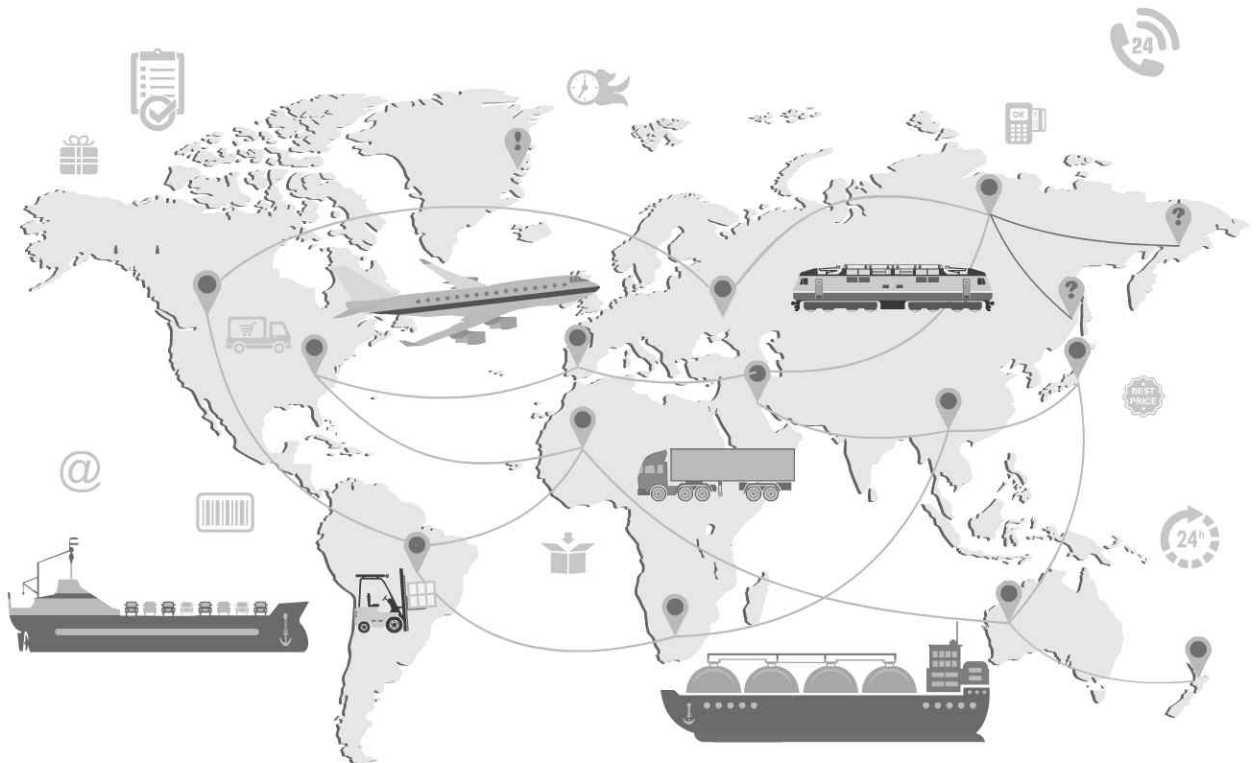
HS.No		원산지결정기준(원칙)	쿼터를 조건으로 한 완화된 원산지결정기준	쿼터수량 (M/T)
5408	한-EU	(예시) 역외산 펄프용매 → 방사 → 아세테이트F사 → 제직	(예시) 역외산 아세테이트F사 → 제직 → 아세테이트직물	1,950 ¹¹⁾
	한-터키			200

자료 : 한-EU 및 한-터키 FTA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바탕으로 연구자 재구성.

11) 한-EU FTA 협정상 쿼터는 17,805,290이고 물량 단위는 SME로 kg으로 환산 시 9,13SME/kg으로 적용

한편, 페루의 경우에는 선택기준 중 4단위 세번변경기준의 경우 사용되는 원사가 다른 호에 분류되므로 역외산 원사를 사용하더라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 즉, 직물을 수입하여 염색가공만 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역외산 원사를 투입, 역내에서 제직공정을 거쳐 직물을 생산하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것이다.

다만, 한-페루 FTA에서는 부가가치기준과 날염 또는 염색공정의 결합기준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제시된 물품처럼 해당물품의 제조에 직물을 조달하여 생산한다 하더라도 해당직물이 반드시 역내산일 필요는 없으며 또한 염색공정을 통해 완제품(염색직물)이 제조되므로 한-페루 FTA활용에 있어 역내부가가치가 50%이상 발생하면 원산지상품으로서의 지위를 획득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한-페루 FTA의 경우 수출자가 원재료 조달방법, 제조공정 등을 고려하여 수출자에게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12인조필라멘트와 혼방한 재생·반(半)합성 스테이플섬유의 염색직물						
매제비전과		산업		섬유		
		상품명		인조필라멘트와 혼방한 재생·반(半)합성 스테이플섬유의 염색직물		
		품명	5516		재생·반(半)합성 스테이플섬유의 직물	
				22	염색한 것	
	주요 원재료	상품 코드		세부 품명		
		5510	11	MODAL사		
		5402	33	폴리에스테르 가연사(POLY DTY)		
		3204	11	(분산)염료		
		3204	16	(반응성)염료		
		3809	91	유연제		
	주요 제조과정	주요 제조공정도		제직 - 전처리 - 염색 - 건조·열처리 - 검사·포장		
		①	제직	MODAL사와 폴리에스테르 가연사를 혼방하여 직기를 통해 제직		
		②	전처리	제직된 생지를 호발, 정련을 통해 불순물 제거		
		③	염색	분산염료와 반응성염료를 배합하여 염색기를 통해 직물 염색		
		④	건조·열처리	젖은 직물을 건조하고 유연제 등으로 마감처리		
		⑤	검사·포장	불량 상태를 검사한 뒤 포장		
FTA활용정보	협정	수출액	활용률	MFN	특혜세율	원산지결정기준
	베트남	4,421	48.2	40.0	0.0	CTH or RVC(40)
	칠레	17	0.0	6.0	0.0	CTH ex from 5106 – 5110, 5205, 5206, 5401 – 5404, 5509, 5510, 5512 – 5516
	콜롬비아	43	0.0	20.0	0.0	CTH ex from 5106 – 5113, 5205 – 5212, Ch54, 5509 – 5516
	미국	1,719	74.7	14.9	0.0	CTH ex from 5106 – 5110, 5205, 5206, 5401 – 5402, 5403.20, 5403.33, 5403.39, 5403.42 – 5404, 5509, 5510, 5512 – 5516
	터키	1,419	85.1	8.0	4.0	SP ¹²⁾

단위 : 천 달러, %

주 : FTA 활용정보 항목은 2016년 기준으로 작성, 세율의 경우 체약상대국의 HS 6단위 기준 평균세율

12) 해당물품의 한-터키 FTA 원산지결정기준은 제5407.72호와 동일하므로 해당 부분을 참고하기 바람

FTA 활용방안 분석

제시된 협정의 원산지결정기준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터키의 가공공정기준이다. 해당물품은 인조필라멘트와 재생·반(半)합성 필라멘트를 혼방한 염색직물이므로 화학재료, 즉 제39류에 해당하는 원재료로부터 사와 직물까지 생산되어야만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할 수 있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Yarn forward 기준이 적용된다.¹³⁾

둘째, 미국, 칠레 콜롬비아의 조건부 4단위 세번변경기준이다. 세 협정 모두 제5106호, 제5205호 등의 제외 세번을 명시하여 역내산 사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동일하나 각 제외 세번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각 협정별 제외 세번을 정확히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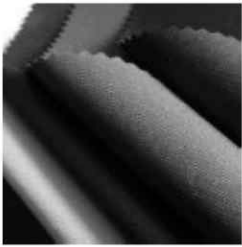
셋째, 한-베트남 FTA의 선택기준이다. 한-베트남 FTA에서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과 부가가치기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역외산 사(Yarn)를 이용하더라도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어렵지 않게 충족할 수 있고, 만약 역외산 직물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역내 부가가치가 40% 이상 발생하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할 수 있으므로 타 협정에 비해 상당히 완화된 형태의 원산지결정기준이라고 볼 수 있다.

해당 물품의 일반적인 주요 원재료 및 제조공정 그리고 완제품의 세번을 고려해 보았을 때 베트남을 제외한 전 협정의 원산지결정기준은 충족하기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우선 해당물품의 주요 원재료로서 제54류와 제55류에 해당하는 원사들이 필수적으로 사용됨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을 제외한 대부분의 협정에서 제54류 및 제55류에 해당하는 사들을 제외 세번으로 명시하여 반드시 역내산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물품의 제조에는 각 협정별 최소허용기준¹⁴⁾을 초과하는 역외산 원사사용이 제한되므로 방적공정을 통해 역내산 인정을 받은 원사를 중심으로 제품이 생산되어야 비로소 원산지 지위를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베트남의 경우에는 역외산 원사를 사용하더라도 원재료인 각 원사와 완제품인 직물의 4단위 세번이 상이하므로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쉽게 충족할 수 있다. 즉, 직물을 수입하여 염색가공만 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역외산 원사를 투입, 역내에서 제직공정을 거쳐 직물을 생산하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것이다. 또한, 만약 직물을 수입한다 하더라도 역내 부가가치가 40% 이상 발생하면 제시된 부가가치기준을 충족할 수 있으므로 여타 협정에 비해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이 매우 쉽다고 판단할 수 있다.

13) 제5408.22호에 대한 한-EU FTA 원산지결정기준 중 1호의 경우 고무사가 사용되지 않으므로 적용할 수 없고 제2호의 2-2의 경우 해당물품이 날염작업(Printing)이 수행되지 않으므로 적용할 수 없다.

14) 최소허용기준은 각 협정 및 물품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중량기준으로 약 1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역외산 사의 사용이 가능하다.

13	폴리우레탄 직물					
 산업 직물/편물	상품명 폴리우레탄 직물					
		품명 5903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방직용 섬유류의 직물류			
			20 폴리우레탄의 것			
	주요 원재료	상품 코드		세부 품명		
		5407	41	나일론 직물		
		3204	90	염료		
		3909	50	폴리우레탄레진		
		3809	91	열경화제		
	주요 제조과정	주요 제조과정도		원단입고 - 염색 - 건조·다림질(텐터) - 코팅 - 검품·포장		
		①	원단입고	원단(나일론 직물)을 입고하여 염색기계에 투입		
		②	염색	염료, 물 등을 혼합하여 최대 100℃ 온도에서 염색		
		③	건조·다림질	염색이 끝난 원단을 건조 후 160℃~170℃ 온도에서 다림질		
		④	코팅	폴리우레탄 레진을 원단에 도포한 뒤 최대 160℃ 온도에서 코팅		
		⑤	검품·포장	코팅 완료된 원단을 검사한 뒤 포장		
FTA 활용정보	협정	수출액	활용률	MFN	특혜세율	원산지결정기준
	페루	651	44.8	20.0	6.8	CC ex from 5106-5113, 5205-5212, 5307-5308, 5310-5311, 5402.11-5402.39, 5402.45-5402.69, 5404.12-5404.90, 5406-5408, 5509-5516
	베트남	189,989	34.2	35.0	5.0	CC or RVC(40)
	EU	35,116	86.9	8.0	0.0	SP ¹⁵⁾
	뉴질랜드	260	69.7	7.0	0.0	CC
	터키	11,080	96.2	8.0	2.7	SP ¹⁶⁾

단위 : 천 달러, %

주 : FTA 활용정보 항목은 2016년 기준으로 작성, 세율의 경우 체약상대국의 HS 6단위 기준 평균세율

1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사로부터 생산된 것
2. 날염작업과 이에 수반하는 최소한 두 가지 준비 또는 마무리 공정(정련, 표백, 머머서라이징, 열처리, 기모, 캘린더링, 방축가공, 영구마감처리, 데커타이징, 침투, 보수 및 벌링과 같은 것을 말한다)을 한 것. 다만, 날염되지 않은 비원산지 직물의 가격이 그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47.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16) 한-EU FTA 원산지결정기준과 동일

FTA 활용방안 분석

해당 물품의 일반적인 주요 원재료 및 제조공정 그리고 완제품의 세번을 고려해 보았을 때 페루를 제외한 나머지 협정의 원산지결정기준은 상대적으로 충족하기 용이한 편에 속하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해당물품의 주요 원재료인 직물의 경우 관세율표 제59류 주 제1호에 따라 제50류부터 제55류, 제5803호 등 제59류 이외의 물품만이 사용되므로 2단위 세번변경기준(CC)이 자연스럽게 충족될 수 있다. 또한, 또 다른 주요 원재료인 플라스틱 수지는 제39류에 분류되고 기타 염색 등을 위해 투입되는 원재료는 제32류, 제38류 등에 분류되므로 이 또한 2단위 세번변경기준(CC)을 충족하기 용이하다.

【제59류의 방직용 섬유의 직물 정의】

1.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 류에서 “방직용 섬유의 직물”이란 제50류부터 제55류까지 · 제5803호 · 제5806호의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제5808호의 원단 상태인 브레이드(braid)와 장식용 트리밍(trimming), 제6002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자료 : 관세율표.

한편, EU 및 터키의 경우 해당 협정의 역외산 사의 사용이 가능하므로 직물을 생산하는 제직공정부터 우리나라에서 수행되기만 하면 원산지결정기준을 자연스럽게 충족할 수 있으므로 이 또한 원산지결정기준이 엄격하다고 볼 수 없다.

반면, 한-페루 FTA의 원산지결정기준은 조건부 2단위 세번변경기준(CC)로서 제5106호, 제5205호 등의 원사와 제5407호, 제5512호 등의 직물 또한 제외 세번에 명시하여 반드시 역내산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제시된 원재료와 같이 제5407호의 나일론 직물이 사용되는 경우 한-페루 FTA상 반드시 역내산을 사용해야 하므로 이러한 부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반면, 베트남의 경우에는 역외산 원사 및 직물을 사용하더라도 원재료(원사 및 기본직물)와 완제품의 2단위 세번이 상이하므로 2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쉽게 충족할 수 있다. 즉, 역외산 직물을 바탕으로 염색가공 및 플라스틱 시트를 도포하는 경우에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만약 2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인 경우라도 역내 부가가치가 40% 이상 발생하면 제시된 부가가치기준을 충족할 수 있으므로 여타 협정에 비해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이 매우 쉽다고 판단할 수 있다.

14		롱파일 편물				
매년변경 표		산업		식물/편물		
		상품명		롱파일 편물		
		품명	6001		파일(pile) 편물	
				10	롱파일(long pile) 편물	
	주요 원재료	상품 코드		세부 품명		
		5402	47	폴리에스테르사		
		3204	11	분산염료		
		3402	12	방전제		
		2831	10	환원세정제		
		3909	50	폴리우레탄		
	주요 제조과정	주요 제조공정도		편직 - 전처리 - 염색 - 건조 · 방전처리 - 검품 · 포장		
		①	편직	원사를 원단으로 만드는 공정으로서 편직기를 통해 원사(폴리에스테르사)를 편직		
		②	전처리	원단의 염색성을 높이기 위해 원단 표면을 깎음(기모처리)		
		③	염색	원단에 분산염료 및 환원세정제를 투입하여 염색		
		④	건조 · 방전처리	염색된 원단을 건조하며 방전제를 사용한 방전처리		
		⑤	검품 · 포장	불량원단을 검사한 뒤 구매자 요구에 맞도록 포장		
FTA 활용정보	협정	수출액	활용률	MFN	특혜세율	원산지결정기준
	EU	5,390	89.6	8.0	0.0	SP ¹⁷⁾
	베트남	9,270	26.4	40.0	0.0	CTH or RVC(40)
	미국	2,668	43.2	13.1	0.0	CC ex from 5106-5113, Ch.52, 5307-5308, 5310-5311, 5401-5402, 5403.33-5403.39, 5403.42-5408, 5501-5503.20, 5503.40-5503.90, 5505-5516
	터키	912	81.7	8.0	0.0	SP ¹⁸⁾
	ASEAN	5,933	17.0	40.0	0.0	CTH or RVC(40)

단위 : 천 달러, %

주 : 1. FTA 활용정보 항목은 2016년 기준으로 작성, 세율의 경우 체약상대국의 HS 6단위 기준 평균세율

2. 아세안 세율의 경우 각 체약상대국별 수출규모가 가장 큰 국가(베트남)의 HS 6단위 평균세율 적용

1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부터 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1. 천연섬유 2. 인조스테이플섬유(카드, 코움 또는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한 것을 제외한다) 3.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상품과 관련된 특별조건인 경우 이 부의 주석 6 참조

18) 한-EU FTA 원산지결정기준과 동일

FTA 활용방안 분석

제6001.10호에 분류되는 롱파일 편물은 주로 제54류 등의 원사를 바탕으로 경사(經絲)나 위사(緯絲)를 교착시켜 제작된 것이 아니고 서로 연결되어 있는 루프(loop)를 계속하여 만듦으로써 편조된 편직물이다. 해당물품의 경우 제32류의 염료 등을 사용하여 염색한 편물로서, 주요 제조공정으로는 「편직 - 전처리 - 염색 - 건조·방전처리 - 검품·포장」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해당 물품에 대한 체약상대국의 세율을 살펴보면, 터키, EU, 미국이 평균적으로 약 8.0~13.1%의 MFN 세율을 적용하고 있고 베트남의 경우 40.0%의 상당한 고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품목에 대한 특혜세율은 제시된 전 협정 모두 이미 0%로 수렴되어 있다.

원산지결정기준은 베트남과 아세안이 4단위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의 선택기준을 채택하고 있고 미국은 조건부 2단위 세번변경기준(CC), EU와 터키의 경우 가공공정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다만, 미국의 경우 원산지결정기준을 조건부 2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채택함에 따라 제5106호 등의 제외 세번이 명시되어 있고, 주요 원재료인 제54류 등의 사(Yarn) 또한 포함되어 있어 해당물품 제조 시 역내산을 쓸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EU나 터키의 경우에는 가공공정기준을 채택하고 있고 해당물품이 폴리에스테르사로 제조된 염색편물이므로 화학재료, 즉 제39류에 해당하는 원재료로부터 사와 편물까지 생산되어야만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할 수 있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Yarn forward 기준이 적용된다.

해당 물품의 일반적인 주요 원재료 및 제조공정 그리고 완제품의 세번을 고려해 보았을 때 EU, 터키 및 미국의 원산지결정기준은 충족하기 쉽지 않은 반면, 베트남과 아세안의 원산지결정기준은 이에 비해 충족이 매우 쉬운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제시된 주요 원재료는 제54류에 해당하는 원사들로 한-EU 및 한-미 FTA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Yarn forward 규정에 따라 역내산을 사용해야만 하나 베트남과 아세안의 경우에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으로 역외산 원사를 사용하더라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 즉, 제6001호의 편물을 수입하여 염색가공만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어렵지 않게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할 수 있게 된다.

15		청소포				
매출액정보		산업		직물/편물		
		상품명		청소포		
		품명	6307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	
				10	마루닥이포 · 접시닥이포 · 더스터(duster)와 이와 유사한 청소용 포	
	주요 원재료	상품 코드		세부 품명		
		5407	52	원단		
		5407	72	원단		
		5508	10	봉제사		
	주요 제조공정	주요 제조공정도		재단 - 봉제 - 검품 · 포장		
		①	재단	청소포에 적합한 원단을 치수에 맞게 재단		
②		봉제	나일론 및 폴리에스터 봉제사로 봉제			
③		검품 · 포장	봉제 마친 원단을 검품 후 포장			
FTA 활용정보	협정	수출액	활용률	MFN	특혜세율	원산지결정기준
	뉴질랜드	100	18.5	5.0	0.0	CC or RVC(40)
	베트남	1,016	20.0	12.0	0.0	CC or RVC(40)
	중국	1,358	32.2	14.0	9.8	CC or RVC(40)
	페루	3	57.6	20.0	0.0	CC ex from 5106-5113, 5205-5212, 5306-5311, 5402.11-5402.39, 5402.45-5402.69, 5404.12-5404.90, 5406-5408, 5509-5516, 6001-6006 + [{cut(knit to shape) and sewn} or otherwise assembled]
	ASEAN	2,444	37.7	12.0	0.0	{CC ex from 5007, 5111- 5113, 5208-5212, 5309- 5311, 5407-5408, 5512-5516, 5801-5802, Ch60 + (cutting & sewing)} or RVC(40)

단위 : 천 달러, %

주 : 1. FTA 활용정보 항목은 2016년 기준으로 작성, 세율의 경우 체약상대국의 HS 6단위 기준 평균세율

2. 아세안 세율의 경우 각 체약상대국별 수출규모가 가장 큰 국가(필리핀)의 HS 6단위 평균세율 적용

FTA 활용방안 분석

제6307.10호에 분류되는 청소포는 주로 제54류나 제60류의 식물 또는 편물 등의 원단을 바탕으로 재단·봉제가공된 물품이다. 해당물품의 경우 제54류에 해당하는 직물을 바탕으로 봉제 등의 가공처리된 물품으로서, 주요 제조공정으로는 「재단 - 봉제 - 검품·포장」의 비교적 간단한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해당 물품에 대한 체약상대국의 세율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고세율이 부과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특히 베트남이 50%의 MFN 세율을 적용하고 있어 세율차에 의한 FTA혜택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페루, 아세안, 중국 등이 14.0~20.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고 뉴질랜드가 7.5%의 세율을 보여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품목에 대한 특혜세율의 경우 뉴질랜드와 페루가 0%로 완전철폐되었고 중국이 9.8%, 베트남과 아세안이 5.0% 정도의 특혜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원산지결정기준은 페루가 조건부 2단위 세번변경기준과 가공공정기준의 결합기준을 채택하고 있고 뉴질랜드, 베트남, 중국 및 아세안은 2단위 세번변경기준(CC)과 부가가치기준의 선택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특히, 페루와 아세안의 경우 2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제외 세번이 상이하므로 협정 적용 시 이들 물품에 대한 원산지상품인지 여부 판단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해당 물품의 일반적인 주요 원재료 및 제조공정 그리고 완제품의 세번을 고려해 보았을 때 페루와 아세안의 원산지결정기준은 충족하기 쉽지 않은 반면, 베트남, 뉴질랜드 및 중국의 원산지결정기준은 이에 비해 충족이 매우 쉬운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제시된 주요 원재료는 제54류에 해당하는 원단들로 한-페루 및 한-아세안 FTA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Yarn forward 규정에 따라 역내산을 사용해야만 하나 기타 베트남 등의 경우에는 2단위 세번변경기준으로 역외산 원사 및 원단을 사용하더라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 즉, 제54류나 제60류의 원단을 수입하여 완제품인 청소포를 제조하게 되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제시된 협정의 원산지결정기준 중 주목할 부분은 한-아세안 FTA와 한-베트남 FTA 원산지결정기준의 차이이다. 한-아세안 FTA의 경우 역내산을 사용해야만 하는 물품이 많아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이 쉽지 않지만 한-베트남 FTA의 원산지결정기준은 2단위 세번변경기준과 40%의 역내부가가치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된다. 또한, 특혜세율은 두 협정 모두 5.0%를 적용하고 있으므로 해당물품에 대한 對베트남 수출업체는 한-아세안 FTA보다 한-베트남 FTA를 활용하여 수출하는 것이 보다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16		금고				
매출비중정보		산업		공구/기계		
		상품명		금고		
		품명	8303		비금속으로 만든 장갑하거나 보강한 금고, 스트롱 박스, 스트롱룸용 문과 저장실, 현금함이나 손금고와 이와 유사한 것	
				00		
	주요 원재료	상품 코드		세부 품명		
		7209	16	철판		
		3208	90	페인트		
		2523	21	시멘트		
		3926	90	명판		
		8302	49	금고핸들		
		8538	90	PCB기판		
		8301	60	솔레노이드		
		8301	40	KEY SET		
		8301	60	락 박스 SET		
		3926	30	서랍손잡이		
		7318	23	리벳		
		7320	20	트위스트스프링		
		7318	15	고정용 나사		
		8302	20	카스터(바퀴)		
	주요 제조과정	주요 제조공정도		철판가공 - 용접 - 충전 - 도장 - 조립		
①		철판가공	철판을 크기에 맞게 절단가공			
②		용접	가공된 철판의 연결부위를 용접 후 세척			
③		충진	내화(耐火)성능을 갖는 시멘트를 금고 내부에 충전			
④		도장	요청 색상에 따라 페인트로 도막 형성			
⑤		조립	시건장치, 서랍 등을 부착조립 후 포장			
FTA활용정보	협정	수출액	활용률	MFN	특혜세율	원산지결정기준
	뉴질랜드	208	90.1	7.0	0.0	CTH
	호주	1,661	85.6	5.0	0.0	CTH
	칠레	190	64.7	6.0	0.0	CTH
	EU	8,171	91.0	2.7	0.0	CTH
	ASEAN	3,050	46.8	10.0	0.0	CTH or RVC(40)

단위 : 천 달러, %

주 : 1. FTA 활용정보 항목은 2016년 기준으로 작성, 세율의 경우 체약상대국의 HS 6단위 기준 평균세율

2. 아세안 세율의 경우 각 체약상대국별 수출규모가 가장 큰 국가(인도네시아)의 HS 6단위 평균세율 적용

FTA 활용방안 분석

제8303.00호에 분류되는 금고는 일반적으로 제72류에 분류되는 철판 등을 바탕으로 시멘트(제2008호), 핸들(제8302호), 페인트(제3208호) 등의 다양한 원재료를 결합하여 만든 물품으로 주요 제조공정으로는 「철판가공 - 용접 - 충전 - 도장 - 조립」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FTA 활용률과 관련하여서는 제시된 협정 모두 전반적으로 우수한 활용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수출규모를 보이고 있는 EU가 91.0%, 뉴질랜드가 90.1%, 호주가 85.6%의 높은 FTA 수출활용률을 보인 반면, 칠레는 64.7%, 특히 아세안의 경우에는 46.8%의 저조한 활용률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세율의 경우 전반적으로 10% 이하의 구조를 보이고 있으며 EU가 평균 2.7%의 MFN 세율을 적용하고 있어 가장 낮았고 아세안이 10.0%의 세율을 부과하고 있어 가장 고세율로 나타났다. 특혜세율은 제시된 전 협정 모두 0%로 확인되었다.

한편, 원산지결정기준은 전 협정에서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세안의 경우 해당 협정의 일반적 원산지결정기준인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과 부가가치기준의 선택기준을 적용하고 있고, 그 밖의 원산지결정기준과 관련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해당 물품의 일반적인 주요 원재료 및 제조공정 그리고 완제품의 세번(제3212.10호)을 고려해 보았을 때, 모든 협정에서 제시된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제시된 주요 원재료들은 대부분 완제품인 제8303.00호와 상이한 세번(제7209호, 제3208호, 제2523호, 제3926호 등)에 분류됨에 따라 4단위 세번변경기준 충족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품목분류상 해당 제83류의 물품은 비금속으로 만든 부분품이 그 본체와 함께 분류되도록 하고 있으므로, 만약 제8303호에 함께 분류되는 부분품이 원재료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역내산을 사용해야 하며 역외산 원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최소허용기준 이내에서 사용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제83류의 부분품 분류규정】

1. 이 류에서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부분품은 그 본체와 함께 분류한다. 다만, 제7312호·제7315호·제7317호·제7318호·제7320호의 철강으로 만든 물품, 제74류부터 제76류까지와 제78류부터 제81류까지에 해당하는 그 밖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이와 유사한 물품은 이 류의 물품의 부분품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자료 : 관세율표.

17		밸브			
	산업 상품명 품명	공구/기계			
		밸브			
		8481		파이프 · 보일러 동체 · 탱크 · 통이나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 · 코크 · 밸브와 유사한 장치	
	PE 밸브		80	그 밖의 기기	
		상품 코드		세부 품명	
	주요 원재료 주요 제조공정	3901	20	폴리에틸렌	
		3902	10	폴리프로필렌	
		4002	59	합성고무(NBR)	
		3907	10	폴리아세탈수지	
		주요 제조공정도		원료 투입 - 사출 · 성형 - 조립 · 용착 - 검품 · 포장	
		①	원료 투입	각 부품에 맞는 원료를 사출기에 투입	
		②	사출 · 성형	부품별 사이즈에 맞도록 사출성형	
		③	조립 · 용착	성형된 부품을 조립 후 열을 가해 용착	
		④	검품 · 포장	완성 밸브를 검품 뒤 포장	
	BRONZE 밸브	상품 코드		세부 품명	
		7403	22	Body용 청동	
		7415	33	Brass bonnet	
		7415	39	Brass STEM	
		7415	33	Brass SET SCREW	
		7325	99	Hand wheel	
		7415	33	Brass hexagon nut(육각너트)	
		7415	10	Brass Splint pin	
		7419	99	Brass lock plate	
		7415	21	Brass Disc lock washer	
	주요 제조공정	3926	90	Teflon packing	
		7407	21	Brass Rod	
		주요 제조공정도		주조 - 가공 - 조립 - 검품포장	
		①	주조	밸브 Body 제조를 위해 주조틀에 bronze 쇠물 투입	
		②	가공	주조된 Body에 각 규격에 맞도록 절단 및 드릴가공	
		③	조립	가공된 Body에 각 부품을 조립	
		④	검품포장	완성 밸브를 검품 뒤 포장	

FTA 활용정보	협정	수출액	활용률	MFN	특혜세율	원산지결정기준
	칠레	5,008	83.6	6.0	0.0	CTH or [CTSH+BD(45)/BU(30)]
	콜롬비아	640	0.8	13.2	0.0	CTH or BD(45)
	미국	116,559	49.3	3.7	0.0	CTH or [CTSH from 8481.90 + BD(45)/BU(35)]
	베트남	50,013	42.3	8.7	3.1	CTH or RVC(40)
	호주	7,248	30.8	2.5	0.0	CTH or RVC(40)

단위 : 천 달러, %

주 : FTA 활용정보 항목은 2016년 기준으로 작성, 세율의 경우 체약상대국의 HS 6단위 기준 평균세율

FTA 활용방안 분석

해당물품에 대하여 선정된 협정 중 우리나라가 주로 수출하는 국가는 미국으로 약 1억 달러를 상회하는 수출규모를 보이고 있으며 그 뒤를 이어 베트남(약 5천만 달러), 호주(약 700만 달러), 칠레(약 500만 달러)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콜롬비아의 경우 2016년 약 64만 달러를 수출, 상대적으로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세율의 경우 전반적으로 10% 내외의 MFN 세율을 부과하고 있었으며 호주가 평균 2.5%의 MFN 세율을 적용하고 있어 가장 낮았고 콜롬비아가 13.2%의 세율을 부과하고 있어 가장 고세율로 나타났다. 특혜세율은 베트남(3.1%)을 제외한 대부분의 제시된 협정 모두 0%로 확인되었다.

한편, 원산지결정기준은 전 협정에서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을 선택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8481.90호에 밸브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품목분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만약 역외산 밸브 부분품을 주로 이용하여 완제품을 제조할 시에는 해당 부가가치기준 충족을 통해 원산지 상품으로서의 지위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FTA 활용률과 관련하여서는 칠레(83.6%)를 제외한 전 협정 모두 전반적으로 저조한 활용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수출규모를 보이고 있는 미국이 49.3%, 베트남 42.3%, 호주가 30.8%의 FTA수출활용률을 보여 전반적으로 50% 이내의 활용률을 보여주고 있다.

제시된 주요 원재료 및 제조공정 그리고 완제품의 세번(제8481.80호)을 고려해 보았을 때는 모든 협정에서 제시된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다. 다만, 실제 FTA 활용률은 한-칠레 FTA를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해당 원인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플라스틱제 밸브(PE Valve)의 경우 제시된 주요 원재료들이 대부분 제39류에 분류됨에 따라 4단위 세번변경기준 충족은 어렵지 않고 비금속제 밸브(Bronze Valve) 또한 대부분 제74류에 분류되는 원재료로 구성되어 있어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충분히 충족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품목분류상 해당 제8481.90호에는 밸브의 부분품을 분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만약 제8481.90호에 해당하는 역외산 원재료가 최소허용기준 이상 사용되었다면 부가가치기준 충족여부를 검토하여 FTA활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제8481호의 구성체계와 부분품의 품목분류】

HS.No	품명
8481	파이프 · 보일러 동체 · 탱크 · 통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 · 코크 · 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밸브와 온도제어식 밸브를 포함한다)
	10 감압밸브
	20 유압이나 공기압 전송용 밸브
	30 체크(논리턴)밸브
	40 안전밸브
	80 그 밖의 기기
	90 부분품

자료 : 관세율표.

따라서 해당물품의 경우 이러한 제8481.90호에 해당하는 역외산 원재료가 실제로 많이 사용되고 있고 이러한 부가가치기준을 충족하기가 수월하지 않기 때문에 FTA 활용률이 전반적으로 낮게 산출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원산지결정기준을 채택하고 있는 한-칠레 FTA의 수출활용률이 83.6%로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한-칠레 FTA 활용기업들의 원산지결정기준 충족방안을 참고하여 타 협정 적용기업에 전파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18	터치패널				
예제비교과		산업	공구/기계		
		상품명	터치패널		
		품명	8537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패널·콘솔·책상·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基盤)
				10	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
	주요 원재료	상품 코드		세부 품명	
		8538	90	메인보드	
		8538	90	전원부보드	
		8538	90	CF Card 보드	
		8302	49	포트 브라켓	
		8538	90	USB연결 보드	
		8538	90	터치센서	
		4016	93	고무가스켓	
		8302	49	LCD브라켓	
		9013	80	LCD	
		8504	40	조명제어 인버터	
		8538	90	LCD연결 보드	
		3926	90	외함(케이스)	
		3920	99	LCD보호시트	
		8544	49	케이블	
	주요 제조과정	주요 제조공정도		Main PCB 조립 – 터치부 조립 – LCD조립 – 케이스 조립 – 검품·포장	
		①	Main PCB 조립	메인보드, 전원부보드, CF Card 보드, 포트 브라켓 등을 조립	
		②	터치부 조립	FRONT 케이스에 USB연결 보드, 터치센서, 고무가스켓 등을 조립	
		③	LCD조립	LCD 브라켓에 LCD, 조명제어 인버터, LCD연결 보드를 조립	
		④	케이스 조립	외함으로서 REAE케이스와 Main PCB, 터치부, LCD를 조립 후 LCD보호시트 부착	
		⑤	검품·포장	각 종 기능 검사를 거친 뒤 포장	

F T A 활 용 정 보	협정	수출액	활용률	MFN	특혜세율	원산지결정기준
	베트남	45,783	27.8	7.2	1.1	CTH or RVC(40)
	칠레	1,212	90.3	6.0	0.0	(CTH ex from 8538) or [CTH from 8538 + BD(45)/BU(30)]
	미국	229,728	80.3	2.7	0.0	CTH
	ASEAN	41,470	51.3	7.2	1.1	CTH or RVC(40)
	터키	19,335	74.7	2.1	0.7	CTH or MC(45)

단위 : 천 달러, %

주 : 1. FTA 활용정보 항목은 2016년 기준으로 작성, 세율의 경우 체약상대국의 HS 6단위 기준 평균세율

2. 아세안 세율의 경우 각 체약상대국별 수출규모가 가장 큰 국가(베트남)의 HS 6단위 평균세율 적용

FTA 활용방안 분석

해당물품에 대한 세율의 경우 베트남, 아세안, 칠레가 약 6.0~7.2%의 MFN 세율을 부과하고 있었으며 미국과 터키의 경우 평균 2.1~2.7%의 MFN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특혜세율은 베트남 등(1.1%)을 제외하고 0%가 적용되고 있다.

한편, 원산지결정기준은 전 협정에서 4단위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을 선택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번변경기준에 있어서 한-칠레 FTA의 경우에는 제8538호로부터의 변경은 인정하고 있지 않아 제8538호의 부분품을 이용하여 완제품을 제조할 경우에는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FTA 활용률과 관련하여서는 칠레(90.3%), 미국(80.3%), 터키(74.7%)가 우수한 활용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아세안과 베트남의 경우 각각 51.3%, 27.8%의 활용률을 보여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제시된 주요 원재료 및 제조공정 그리고 완제품의 세번(제8481.80호)을 고려해 보았을 때는 모든 협정에서 제시된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다. 우선 완제품인 제8537.10호의 부분품은 HS 제16부 주 제2호 규정에 따라 별도의 4단위 호인 제8538호 독립하여 분류하고 있고 LCD 패널의 경우 제9013호로 분류되는 등 모든 원재료가 완제품 세번과 상이하므로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충분히 충족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전술한 바와 같이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한-칠레 FTA에서는 제8538호로부터의 변경을 인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제8538호의 부분품을 이용하여 완제품을 제조할 경우에는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9		연마 제품				
물품정보		산업		잡품		
		상품명		연마 제품		
		품 명	6805		천연 · 인조의 연마용 가루나 알갱이를 방직용 섬유재료 · 종이 · 판지나 그 밖의 재료에 부착한 물품	
				30	그 밖의 재료를 기본 재료로 한 것	
	주요 원재료	상품 코드		세부 품명		
		3920	62	PET FILM		
		2818	10	연마제로서 인조 커런덤(산화 알루미늄)		
		3208	10	폴리에스테르계 접착제		
		3909	40	접착제		
		3204	17	안료		
		5804	10	벨크로원단		
		3909	50	접착제		
	주요 제조과정	주요 제조공정도		접착코팅 – 착색코팅 – 벨크로 접착 – 재단 및 포장		
		①	접착코팅	PET FILM에 폴리에스테르계 접착제를 도포한 뒤 연마제로서 인조커런덤을 접착 코팅		
		②	착색코팅	안료와 연마제 고정을 위한 접착제(페놀수지)를 혼합 도포한 후 건조		
③		벨크로 접착	PET FILM 뒷면에 벨크로용 접착제를 도포한 후 벨크로 원단을 붙인 뒤 건조			
④		재단 및 포장	필요한 크기로 재단하여 포장			
F T A 활용정보	협정	수출액	활용률	MFN	특혜세율	원산지결정기준
	ASEAN	2,232	75.4	10.0	0.0	CTH or RVC(40)
	인도	488	13.0	10.0	1.6	CTSH+RVC(35)
	중국	11,058	43.8	8.0	6.4	CTH
	터키	780	98.0	1.7	0.0	CTH
	EU	20,383	67.7	1.7	0.0	CTH

단위 : 천 달러, %

주 : 1. FTA 활용정보 항목은 2016년 기준으로 작성, 세율의 경우 체약상대국의 HS 6단위 기준 평균세율

2. 아세안 세율의 경우 각 체약상대국별 수출규모가 가장 큰 국가(베트남)의 HS 6단위 평균세율 적용

FTA 활용방안 분석

제6805.30호에 분류되는 연마제품은 일반적으로 플라스틱 시트(제39류)에 연마제(석영가루, 모래가루, 탄화규소가루, 유리가루 등 재질에 따라 분류)를 접착제(제39류) 등을 사용하여 결합한 제품이다. 주요 제조공정으로는 「접착코팅 - 착색코팅 - 벨크로 접착 - 재단 및 포장」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해당 물품에 대한 체약상대국의 세율을 살펴보면, EU, 터키가 평균적으로 약 1.7%의 MFN 세율을 적용하여 저세율로 나타났고 아세안, 인도, 중국의 경우 8~1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품목에 대한 특혜세율은 중국과 인도가 각각 6.4%, 1.6%가 적용되고 있고 기타 EU, 아세안 등의 특혜세율은 이미 0%로 수렴되어 있다.

원산지결정기준은 인도를 제외한 전 협정에서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중국, 터키, EU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 단일기준을 채택하고 있고 아세안이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과 부가가치기준의 선택기준을, 인도의 경우 6단위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의 결합기준을 채택하고 있어 한-인도 CEPA의 원산지결정기준이 이 중 가장 충족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FTA 활용률과 관련하여서는 터키가 98.0%의 활용률을 보여 매우 우수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으나 수출규모가 그다지 크지 않아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 반면, 수출규모가 큰 EU와 중국의 경우 각각 67.7%, 43.8%의 활용률을 보이고 있으나 두 협정 모두 세율차가 1.6~1.7%밖에 나지 않아 상대적으로 저조한 활용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중국의 경우 해당품목이 10년 균등철폐될 예정이므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적으로 활용률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해당 물품의 일반적인 주요 원재료 및 제조공정 그리고 완제품의 세번을 고려해 보았을 때, 대부분의 협정에 제시된 세번변경기준은 쉽게 충족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제시된 주요 원재료들은 대부분 완제품인 제6805.30호와 상이한 세번(제3920호, 제2818호, 제3208호 등)에 분류되는 것으로 확인되어 4단위 세번변경기준 충족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제39류의 플라스틱을 기재로 하여 제6805호로 분류되는 샌드페이퍼(Sand paper) 등을 접합하여 물품을 제조할 시에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불충족할 수 있기 때문에 제6805호 물품에 대하여 최소허용기준을 적용하거나 역내산을 사용토록 하여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여야 함에 유의하여야 한다. 만약 최소허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역내산을 사용할 수 없다면 중국, 터키, EU 등의 FTA는 활용할 수 없고 다만, 한-아세안 FTA의 경우 선택기준으로서 부가가치기준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역내 부가가치가 40% 이상 발생하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

20		LED 램프				
예제정보		산업		제품		
		상품명		LED 램프		
		품명	9405		램프 · 조명기구, 조명용 사인 · 조명용 네임플레이트 (name-plate)와 유사물품, 이들의 부분품	
				40	그 밖의 전기램프와 조명기구	
	주요 원재료	상품 코드		세부 품명		
		8534	00	PCB		
		8541	40	LED CHIP		
		9405	92	CASE		
		8542	31	IC(집적회로)		
		8533	21	RESISTOR(저항)		
		8541	10	다이오드		
		3907	30	에폭시수지		
		7318	15	스크류		
	주요 제조공정	주요 제조공정도		부품 실장 – PCB조립 – 에폭시 도포 – 검품 · 포장		
		①	부품 실장	PCB에 LED CHIP, IC, 저항, 다이오드 등 부품을 실장		
		②	PCB 조립	부품이 실장된 PCB를 케이스에 조립		
		③	에폭시 도포	방수방진 처리 위해 PCB 위에 에폭시 도포		
		④	검품 · 포장	에폭시가 경화되면 검품 뒤 포장		
FTA 활용정보	협정	수출액	활용률	MFN	특혜세율	원산지결정기준
	콜롬비아	1,046	0.0	16.7	0.0	CTH or BD(45)
	EU	42,707	80.6	3.7	0.0	MC(50)
	인도	7,377	41.8	12.5	0.0	CTSH + RVC(35)
	베트남	11,916	55.4	16.3	0.0	CTH or RVC(40)
	중국	46,390	50.6	15.0	11.3	CTH or RVC(40)

단위 : 천 달러, %

주 : FTA 활용정보 항목은 2016년 기준으로 작성, 세율의 경우 체약상대국의 HS 6단위 기준 평균세율

FTA 활용방안 분석

해당물품에 대한 세율의 경우 EU(3.7%)를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15% 내외의 높은 MFN 세율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혜세율은 중국(11.3%)을 제외한 제시된 협정 모두 0%로 확인되어 세율 차에 의한 특혜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원산지결정기준과 관련해서는 우선 콜롬비아, 베트남, 중국과의 협정에서는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의 선택기준을 채택하고 있고 한-인도 CEPA에서는 6단위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의 결합기준을, 마지막으로 한-EU FTA에서는 부가가치기준만을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각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기준의 경우 그 비율 또한 상이하므로 각 협정을 활용함에 있어 이러한 내용을 정확히 판단하고 FTA를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FTA 활용률과 관련하여서는 EU(80.6%)를 제외한 전 협정 모두 전반적으로 저조한 활용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수출규모를 보이고 있는 중국은 50.6%, 베트남 55.4%, 인도가 41.8%의 FTA수출활용률을 보여 전반적으로 50% 내외의 활용률을 보여주고 있다.

제시된 주요 원재료 및 제조공정 그리고 완제품의 세번(제9405.40호)을 고려해 보았을 때, 전반적으로는 각 협정에 제시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다. 다만, 실제 FTA 활용률은 한-EU FTA를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해당 원인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해당물품에 주로 사용되는 PCB(제8534호), LED CHIP(제8541호), 집적회로(제8542호) 등이 모두 완제품 세번과 상이한 세번으로 분류되므로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어렵지 않게 충족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품목분류상 해당 제9405.9호에는 해당물품의 부분품을 분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만약 제9405.9호에 해당하는 역외산 원재료가 최소허용기준 이상 사용되었다면 부가가치기준

충족여부를 검토하여 FTA 활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한-EU FTA의 경우 부가가치기준 단일기준이고 한-인도 CEPA의 경우 6단위 세번변경기준(CTSH)과 부가가치기준의 결합기준이므로 당연히 부가가치기준의 검토가 필요하다.

【제9405호의 구성체계와 부분품의 품목분류】

HS.No	품 명
9405	램프 · 조명기구[서치라이트(searchlight) · 스포트라이트(spotlight)와 이들의 부분품을 포함하고,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조명용 사인 · 조명용 네임플레이트(name-plate)와 이와 유사한 물품(광원이 고정되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의 부분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10 상들리에(chandelier)와 그 밖의 천장용 · 벽 부착용 전기식 조명기구[공공공지(公共空地)나 통행로에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
	20 전기식의 테이블 · 책상 · 침대 · 마루스탠드 램프
	30 크리스마스 장식용 조명세트
	40 그 밖의 전기램프와 조명기구
	50 비전기식 램프와 조명기구
	60 조명용 사인 · 조명용 네임플레이트(name-plate)와 이와 유사한 물품
	91 유리로 만든 부분품
	92 플라스틱으로 만든 부분품
	99 기타 부분품

자료 : 관세율표

따라서 해당물품의 FTA 활용률이 전반적으로 낮게 산정되고 있는 이유는 제9405.9호에 해당하는 역외산 원재료가 실제로 많이 사용되고 있고 이러한 부가가치기준을 충족하기가 수월하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기준을 단일기준으로 채택하고 있는 한-EU FTA의 수출활용률이 80.6%로 유독 높은 이유는 역외산 재료 인정비율을 상당히 높게 책정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한-EU FTA에서는 물품의 EXW가격에서 비원산지재료비 비중이 일정수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으로 보기 때문에 해당 부가가치비율이

낮을수록 원산지결정기준이 엄격해지고 부가가치비율이 높을수록 원산지결정기준이 완화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물품의 부가가치기준이 MC(50)이므로 물품의 공장도 가격 대비 비원산지재료가 50%까지 사용이 가능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비원산지재료 사용이 가능하고 이에 따라 한-EU FTA의 활용률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한-EU FTA의 부가가치기준 계산방법】

$$\text{부가가치 비율} = \frac{\text{비원산지재료의 가격}}{\text{물품의 공장도가격}} \times 100$$

자료 : 한-EU FTA 협정문.

결과적으로 가장 최근 발효된 한-뉴질랜드 FTA의 원산지결정기준과 같이 6단위 세번변경기준(CTSH) 또는 부가가치기준의 선택기준으로 원산지결정기준을 설정하여 제9405.9호에 분류되는 역외산 부분품의 사용을 허용하거나, 현행 부가가치비율을 보다 원산지결정기준이 충족되기 쉽도록 그 비율을 조정한다면 보다 많은 수출업체들이 FTA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II

협정별 FTA 활용 가이드

1. FTA 활용관련 애로사항 상담내용
2. 협정별 FTA 활용 가이드



Ⅲ. FTA 활용 가이드

1. FTA 활용관련 애로사항 상담내용

FTA 활용관련 빈번하게 상담된 애로사항 및 상담내용을 정리하였다.

- Q** 1. 수출국과 수입국의 상이한 HS 품목번호로, 서로 다른 원산지결정기준이 적용되어 원산지결정기준이 충족되지 못하여 특혜 세율을 적용받지 못했다.

답변 : 통관지 세관에서 특혜관세 적용 후 수입자 주소지 관할 세관(원산지검증담당부서)에 검증 의뢰하는 방법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 Q** 2. 세번변경기준에 따른 경우 FOB금액이 누락되어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이하 'C/O'로 표기)를 인정받지 못하여, 한-ASEAN 특혜 세율을 적용받지 못하였다.

답변 : 한-ASEAN 포괄적 경제협력협정 상품무역협정 원산지증명 운영절차(OCP) 개정발효(2014.1.1.)로, 한-ASEAN FTA C/O에 FOB 금액은 역내가치 포함비율 기준 적용 시에만 기재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경 내용이 ASEAN 국가들의 행정시스템에 반영되지 않아 2014년 상담 문의가 많았다.

- Q** 3. 인도네시아로 수출한 물품에 대한 C/O발급일이 선적일보다 빠를 경우 인도네시아 세관 측에서 C/O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

답변 : 제8차 한-아세안 포괄적 경제협력협정 이행위원회에서 채택되어 2014년 1월 1일부터 개정기로 결정된 개정사항으로 수출당시 C/O 발급 시기를 수출물품 선적 전, 선적 시 또는 선적 직후(선적일로부터 3근무일 이내)에 발급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4. 서명권자가 상이하야 C/O를 인정받지 못했다.

답변 : 담당 세관에서 서명권자 정보를 전달하고 서명권자가 맞음을 확인하는 서한문을 현지 담당 세관에게 발송하여 인정을 요청하였다.

※ 서명권자 검색방법

관세청 Uni-Pass시스템 (<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 접속 후, 정보 조회 메뉴 >> 통관정보 메뉴 >> 수출 >>인장서명검색(외국)에서 조회

5. 수출자에게서 받은 C/O의 인증수출자 번호의 진위여부 확인 방법은?

답변 : 인증번호의 진위 여부(원산지증빙서류) 등 유효성 여부는 FTA특례법 제13조에 따른 계약상대국 수출자에 대한 원산지에 관한 조사가 수행된 후에 확정할 수 있다.

※ 국내 인증수출자 번호 유효성 확인 방법 :

영문버전 관세청 홈페이지 접속 후, 우측 하단의 [Approved Exporter]에서 확인 가능

한-EU FTA와 관련하여 원산지 신고서에 인증수출자 번호가 아닌 기타 번호(EORI번호, VAT번호)를 기재하여 혜택을 받는 사례가 있다.

※ EORI번호 확인방법 :

http://ec.europa.eu/taxation_customs/dds2/eos/eori_validation.jsp 접속 후, EORI number 입력 후 Validate 클릭

※ VAT번호 확인방법 :

http://ec.europa.eu/taxation_customs/common/databases/index_en.htm 접속 후, Online Services에서 VIES(VAT Information Exchange System) 선택 후, 국가 선택 및 번호 입력 후 Verify 클릭

6. 물품 원산국은 독일이며, 선적은 네덜란드에서 부산항으로 직접 운송되었다. 그러나 B/L 및 invoice 상의 수출자는 스위스인 경우, 한-EU FTA 특혜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가?

답변 : 한-EU FTA에 제3국 송장발행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지만, 무역거래 관행상 송장 등의 상업서류가 비당사국(스위스)에서 다시 발행되는 경우에도 원산지신고서는 EU 역내(독일, 네덜란드)의 (인증)수출자가 작성하였다면 한-EU FTA 특혜 관세를 적용 받을 수 있다.

Q 7. 미국세관으로부터 한-미 FTA 사후 검증 요청서(CBP form 28)를 받았다.

답변 : 미국세관으로부터 요청서를 수령한 수출업체는 세관에서 요청한 서류들(원산지 증명서, 원자재명세서, 제조공정도, 구매발주서, 공정 및 재고 관리 내역서 등)를 요청날짜로부터 30일 안에 제출해야 한다. Form-28의 14번 항목에 제출해야 할 서류가 기재된다. 요청 자료를 송부하면, 검토 결과를 CBP Form-29 Notice of Action이라는 서류로 결과를 통지한다. 요청서에 답변을 하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미비한 경우, 미국 세관은 특혜관세를 배제하고 관세 및 벌금을 징수할 수 있다. 그러므로 초기 대응단계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Q 8. 한-중 FTA 대상 물품이 홍콩을 경유하였을 경우 한-중 FTA 특혜 세율 적용이 가능한가?

답변 : 홍콩세관의 비가공증명서를 제출하면 적용이 가능하다. 중국에서 홍콩을 경유하여 한국으로 수입되는 경우, 비가공증명서는 물품이 제3국을 경유하는 동안 하역, 재선적 등 단순공정만이 진행되었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직접운송 입증서류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규정이 완화되어 화물이 홍콩에서 컨테이너 및 항공기에 적입되더라도 상품의 품명, 포장수량 및 중량의 변동이 없는 경우, 7일 이내 지정된 터미널에서 환적 되는 것이 허용되며 비가공증명서 제출이 면제된다. 또한 컨테이너 화물의 경우 홍콩에서 보관되는 날이 7일을 초과하더라도 컨테이너 번호와 실(seal)번호가 변동이 없다면 비가공 증명서 제출을 면제해 주고 있다.

Q 9. 한-페루 FTA 협정을 적용받기 위해 원산지 증명서(상공회의소 발급)를 페루 세관에 제출하였는데, 페루 Mincetur(통상관광부)의 담당자로 부터 원산지 증명서 서명 및 도장을 실사로 제출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답변 : 관세청이 실사 인장 및 서명을 별도 날인하여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세관에 공문 송부하여 상공회의소에서 발급받은 원산지증명서를 취소하고 세관에서 다시 발급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였다.

10. 중국해관 측에서 전자 C/O가 조회되지 않는다는 통관애로가 접수되었다.

답변 : 발급된 C/O 번호, 통관해관, 수출신고 번호 확인 후, C/O 정상 발급 여부 및 전자 C/O 정상 전송 여부를 확인하여 전자통관시스템 상 한-중 전자 C/O 송·수신이 성공적으로 되었다는 화면 캡처하여 송부하였다.

※ C/O 정상발급 여부 확인 : 대한상공회의소(<http://cert.korcham.net/search>)

※ 전자 C/O 정상 전송 여부 확인(대한상의→관세청)

관세청 영문 홈페이지 >> information plaza >> certificate of origin

원산지자료교환시스템(CO-PASS)에서 C/O 조회가 안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와 증빙서류가 일치하거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으면 특혜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 원산지증빙서류의 종류 :

- 거래계약서, 송품장, 포장명세서, 직접운송서류(B/L, AWB, 비가공증명서 등)
- 대외무역사업자와의 위임장 또는 계약서
- 중국해관에 신고한 수출내역서 사본

2. 협정별 FTA 활용 가이드

협정별로 빈번하게 상담된 내용 중, FTA를 활용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추가적인 정보를 정리하였다.

(1) 한-미 FTA : CBP FTA 사후 검증 제도

한-미 FTA는 수입국 관세당국이 직접 해당 수입품의 원산지 여부에 대한 검증을 수행하는 '직접검증' 방식을 택하고 있어, 미국 세관에서는 수입자, 수출자 및 생산자를 대상으로 검증을 진행할 수 있다(섬유·의류의 경우 간접 혹은 공동검증).

① 정보제공 요청 (CBP FORM 28)

미국 세관은 서면검증을 위해 정보제공요청서(CBP Form 28)를 사용하여 관련 정보를 요청한다. 정보제공 요청사항은 수입신고 건의 품목분류, 관세율, 과세가격 평가, 특혜관세 원산지국의 적정성, 기타 신고사항의 관세법규의 준법여부를 확정하는데 필요한 정보들로서, 일반적으로 소요품명세서(Bills of Materials), 원가산출자료(Cost data), 제조공정도(Production and manufacturing records), ‘물품에 대한 설명’ 등이 포함되며 물품에 따라 더 자세한 정보 및 샘플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 CBP FORM 28을 수취한 수입자나 수출자는 요청일로부터 30일내에 모든 자료를 영문으로 작성하여 미국세관 담당자에게 DHL 등을 통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CBP FORM 28 양식】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REQUEST FOR INFORMATION 19 CFR 151.11		OMB No. 1551-0023 Exp. 03-31-2014	
3. Manufacturer/Seller/Shipper		1. Date of Request	
4. Carrier		2. Date of Entry and Importation	
5a. Invoice Description of Merchandise		5. Entry No.	
5b. Invoice No.		6. HTSUS Item No.	
7. Country of Origin/Exportation		8. CBP Broker and Reference or File No.	
9. TO:		10. FROM:	
Production of Documents and/or Information Required by Law: If you have provided the information requested on this form to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at other ports, please indicate the port of entry to which it was supplied, and furnish a copy of your reply to this office, if possible.		11a. Port	
		11b. Date Information Furnished	
General Information and Instructions on Reverse			
12. Please Answer Indicated Question(s)		13. Please Furnish Indicated Item(s)	
☐ A. Are you related (see reverse) in any way to the seller of this merchandise? If you are related, please describe the relationship, and explain how this relationship affects the price paid or payable for the merchandise.		☐ A. Copy of contract (or purchase order and seller's confirmation thereof) covering this transaction, and any revisions thereto.	
☐ B. Identify and give details of any additional costs/ expenses incurred in this transaction, such as:		☐ B. Descriptive or illustrative literature or information explaining what the merchandise is, where and how it is used, and exactly how it operates.	
☐ (1) packing ☐ (2) commissions ☐ (3) proceeds that accrue to the seller ☐ (4) assists ☐ (5) royalties and/or license fees		☐ C. Breakdown of components, materials, or ingredients by weight and the actual cost of the components at the time of assembly into the finished article.	
		☐ D. Submit samples: Article number and description _____ from container _____ mark(s) and number _____ Samples consumed in analysis, and other samples whose return is not specifically requested, will not normally be returned. ☐ E. See item 14 below.	
14. CBP Officer Message			
15. Reply Message (Use additional sheets if more space is needed.)			
16. CERTIFICATION It is required that an appropriate corporate/company official execute this certificate and/or endorse all correspondence in response to the information requested. (NOTE: NOT REQUIRED IF FOREIGN FIRM COMPLETES THIS FORM.)			
I hereby certify that the information furnished herein on or upon this form in response to this inquiry is true and correct, and that any samples provided were taken from the shipment covered by this entry.		16a. Name and Title/Position of Signer (Owner, Importer, or Corporate/Company Official) 16b. Signature 16c. Telephone No. 16d. Date	
17. CBP Officer		18. Team Designation	
		19. Telephone No.	

CBP Form 28 (03/11)

GENERAL INFORMATION AND INSTRUCTIONS

- The requested information is necessary for proper classification and/or appraisal of your merchandise and/or for insuring import compliance of such merchandise. Your reply is required in accordance with section 509(a), Tariff Action of 1930, as amended (19 U.S.C. 1509).
- All information, documents, and samples requested must relate to the shipment of merchandise described on the front of this form.
- Please answer all indicated questions to the best of your knowledge.
- All information submitted will be treated confidentially.
- If a reply cannot be made within 30 days from the date of this request or if you wish to discuss any of the questions designated for your reply, please contact the CBP officer whose name appears on the front of this form.
- Return a copy of this form with your reply.

DEFINITIONS OF KEY WORDS IN BLOCK 12

Question A: RELATED - The persons specified below shall be treated as persons who are related:

- (A) Members of the same family, including brothers and sisters (whether by whole or half blood), spouse, ancestors, and lineal descendants.
- (B) Any officer or director of an organization and such organization.
- (C) An officer or director of an organization and an officer or director of another organization, if each such individual is also an officer or director in the other organization.
- (D) Partners.
- (E) Employer and employee.
- (F) Any person directly or indirectly owning, controlling, or holding with power to vote, 5 percent or more of the outstanding voting stock or shares of any organization and such organization.
- (G) Two or more persons directly or indirectly controlling, controlled by or under common control with, any person.

PRICE PAID OR PAYABLE - This term is defined as the total payment (whether direct or indirect and exclusive of any costs, charges, or expenses incurred for transportation, insurance, and other C.I.F. charges) made, or to be made, for imported merchandise by the buyer to, or for the benefit of, the seller.

Question B: ASSISTS - The term "assist" means any of the following if supplied directly or indirectly, and free of charge or at reduced cost, by the buyer of the imported merchandise for use in connection with the production or the sale for export to the United States of the merchandise:

- (1) Materials, components, parts, and similar items incorporated in the imported merchandise.
- (2) Tools, dies, molds, and similar items used in the production of the imported merchandise.
- (3) Merchandise consumed in the production of the imported merchandise.
- (4) Engineering, development, artwork, design work, and plans and sketches that are undertaken elsewhere than in the United States and are necessary for the production of the imported merchandise.

PROCEEDS THAT ACCRUE TO THE SELLER - This term is defined as the amount of any subsequent resale, disposal, or use of the imported merchandise that accrues, directly or indirectly, to the seller.

ROYALTIES AND/OR LICENSE FEES - This term relates to those amounts that the buyer is required to pay, directly or indirectly, as a condition of the sale of the imported merchandise for exportation to the United States.

PAPERWORK REDUCTION ACT STATEMENT - An agency may not conduct or sponsor an information collection and a person is not required to respond to this information unless it displays a current valid OMB control number and an expiration date. The control number for this collection is 1551-0023. The estimated average time to complete this application is 2 hours. If you have any comments regarding the burden estimate you can write to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Office of Regulations and Rulings, 799 9th Street, NW, Washington DC 20229.

CBP Form 28 (03/11)(Back)

② FTA 검증에 따른 미국 세관의 조치 사항 (CBP FORM 29)

제출받은 정보를 검토한 미국 세관 담당자는 원산지의 적정성을 확인한 후 결과통지서(CBP Form 29)를 활용하여 예비결과를 통지한다. 예비통보문을 받은 경우 수입자가 20일 이내에 추가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소명할 수 있는데, 어느 부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지 여부를 미국 현지 통관 담당자와 면밀히 협의하여 해당 부분에 대한 증빙자료를 갖추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예비결정 후 재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원산지 충족/불충족 여부를 결정한다.

특혜원산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여 통보된 과세통지 등에 이의가 있을 경우, 불복신청이 가능하며 세액확정 통보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미국 관세청(본청)에 불복신청 할 수 있다.

【CBP FORM 29 양식】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NOTICE OF ACTION <i>This is NOT a Notice of Liquidation</i>		1. DATE OF THIS NOTICE
19 CFR 152.2 2. CARRIER	3. DATE OF IMPORTATION	4. DATE OF ENTRY	5. ENTRY NO.	
6. NP/SELLER/SUPPLIER	7. COUNTRY	8. CUSTOMS BROKER AND FILE NO.		
9. DESCRIPTION OF MERCHANDISE				
10. TO		11. FROM		
12. THE FOLLOWING ACTION, WHICH WILL RESULT IN AN INCREASE IN DUTIES, —				
☐ IS PROPOSED ☐ HAS BEEN TAKEN				
IF YOU DISAGREE WITH THIS PROPOSED ACTION, PLEASE FURNISH YOUR REASONS IN WRITING TO THIS OFFICE WITHIN 20 DAYS FROM THE DATE OF THIS NOTICE. AFTER 20 DAYS THE ENTRY WILL BE LIQUIDATED AS PROPOSED. THE ENTRY IS IN THE LIQUIDATION PROCESS AND IS NOT AVAILABLE FOR REVIEW IN THIS OFFICE.				
TYPE OF ACTION				
☐ A. RATE ADVANCE ☐ B. VALUE ADVANCE ☐ C. EXCESS ☐ WEIGHT ☐ QUANTITY ☐ D. OTHER (See below)				
13. EXPLANATION (Refer to Action letter designations above)				
14. CUSTOMS OFFICER (Print or Type)				
15. TEAM DESIGNATION		16. TELEPHONE		

CBP FORM 29

① 사후검증 결과 표시

- IS PROPOSED :
소명이 불충분하여 추가 소명이 필요함
- HAS BEEN TAKEN :
한-미 FTA 협정관세 배제통보

② 최종결정 종류 표시

- 관세율 증가, 가격증가 등

③ 통지내용 상세설명

- 최종 결정에 대한 세부적인 사유 및 결정 근거를 명시

(2) 한-아세안 FTA : 한-아세안 FTA 개정내용

2007년 6월 1일 발효한 한-아세안 FTA는 지난 10년간 여러 차례 개정과정을 거쳐 원산지 증명 운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자유화 수준을 크게 제고하였다.

【한-아세안 FTA 개정 현황】

구분	주요 내용	시행일
상품협정 개정 1차 의정서	• 라오스 초민감 품목 E그룹 상품협정 통합	2011.03
상품협정 개정 2차 의정서	• 관세, 품목분류 등 변경의 통보 명확화 • 이행위원회에 원산지 인증 관련 개정권한 부여	2012.07
원산지 증명 운영절차 개정	• 원산지 증명서 서식 개정 • 원산지 증명서 발급 시기 명확화 • 원산지 증명서 유효기간 연장 등	2014.01
품목별 원산지 기준 개정	• HS 2007에서 HS 2012로 품목 분류 조정	2015.05
상품협정 개정 3차 의정서	• 품목분류 및 원산지 등 사전심사 제공 • 역내부가가치제도 개선 • 전자 원산지증명서 인정 • 상호대응관세율 적용 배제 • 관세인하 및 철폐 일정 구체화 등	2016.01

자료 : 한-아세안 FTA 10주년의 발자취 (2017, 무역협회)

특히, 한-아세안 FTA 발효 이후 나타난 원산지 증명절차 운영 상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수출입기업의 편의증진 및 FTA활용 제고하기 위하여 제8차 한-아세안 FTA 이행위원회에서 논의되어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품목별 원산지 기준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유효기간)** 수출기업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이 발급일부터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되었다. (제10조 제1항)

② **(기재사항)**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와 편의 증진을 위해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원산지 증명서에 FOB 가격 기재를 생략할 수 있게 되었으나, RVC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FOB 가격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또한 캄보디아, 미얀마에 수출입하는 경우 발효일로부터 2년간 원산지기준에 관계없이 FOB 가격을 기재해야 한다. 또한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출력서식 7항에 제조자(Manufacturer)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발급심사 시에는 첨부된 서류와 대조하여 제조자를 기존과 같이 심사가 진행된다.

- ③ **(발급 시기)** 수출기업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시기를 ‘수출시 또는 수출 직후’에서 ‘선적 전, 선적 시 또는 선적 직후 3 근무일 이내’로 명확하게 정의하였다. (제7조제1항, 제4항)

- ④ **(을지 사용허용)** 품목 및 규격 등 출력서식 7항에 기재할 내용이 많은 경우 기존에는 첫 장과 똑같은 양식으로 뒷장이 계속 추가되었으나 2014년부터는 출력서식 7항의 내용이 많은 경우 을지 양식이 추가되어 뒷면까지 계속 기재된 후 서명 및 인장은 맨 마지막 장에만 출력할 수 있게 되었다. (제5조 제1항, 제2항, 첨부문서 2)

- ⑤ **(오류 정정)** 줄을 그어 지우고 오류를 정정하는 방법 외에 원산지증명서를 새로 발급하여 오류를 정정하는 방법도 허용하게 되었다. (제6조)

이 외에도, ‘상품협정 개정 3차 의정서’를 통해 추가적으로 수출입기업의 편의증진 및 FTA 활용 제고를 위한 내용이 추가되어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 ① 전자적으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도 공식 인정토록 협정문에 규정함으로써, 그간 일부 국가의 증명서 거부로 인한 기업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상품협정 부속서3-부록1-제5조 제1항의 개정)
- ② ‘역내부가가치’ 계산방식(집적법/공제법)도 현행 국가단위에서 하나를 선택하던 방식을 개별 기업별로 유리하게 선택하도록 유연성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개선했다. (상품협정 부속서3-제4조제2항 각주의 개정)
- ③ ‘사전심사 제도’를 한-아세안 FTA에도 새롭게 도입함으로써, 수입자/수출자/생산자가 품목코드, 관세평가 관련 문의, 원산지에 대해 아세안과의 수출입 이전에 FTA혜택 향유 가능성을 기업들이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상품협정 제4조의2 신설)

(3) 한-중 FTA : 원산지자료교환시스템(CO-PASS)

2016년 12월 28일부터 한-중 FTA CO-PASS 시행에 이어 2017년 5월 11일부터 한-중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 CO-PASS도 전면 시행되면서, 한국의 수출 화물의 중국 세관 수입통관 시 한-중 FTA 협정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원산지 증명서 원본 제출 의무가 없어졌으며, 중국으로 부터의 수입 화물에 대해서도 사후 협정적용 신청 시 의무사항이었던 원산지증명서 원본 제출이 생략되었다.

그러나 서류보관 의무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수입자는 원산지 증명서 원본을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원산지 증명서 원본 제출 생략으로 물류비용이 낮아지고 원산지 심사 절차가 간소화되었다.

※ **C/O 자료교환 여부 확인 :**

YES FTA 포털 >> CO-PASS >> CO-PASS 진행정보

※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관련하여 발급된 서류의 이상 유무 확인 :**

한국의 세관 및 상공회의소와 중국질검총국(www.chinaorigin.gov.cn) 및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www.co-ccpit.org)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번호, 송장번호 등을 입력하여 확인할 수 있다.



중소기업 활용 수출유망품목 원산지결정기준 해설 핸드북

발 행 일 2017년 12월

발 행 처 관세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번지

정부대전청사 2-1304호

Tel : 042-481-3204

Fax : 042-481-3299

www.customs.go.kr

국제원산지정보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205번길 8

Tel : 031-6000-701

Fax : 031-6000-704

<http://www.origin.or.kr>

편 집 관세청 자유무역협정 집행기획관실

국제원산지정보원 연구개발본부

인 쇄 처 (주)협동문고

Tel : 02-545-6188

이 책의 저작권은 관세청에 있습니다, 본서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무단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본 피드백을 통해 수집하는 모든 정보는 통관환경 및 정책 향상을 위해 이용되며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우 표

연락처

E-mail

--	--	--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205번길 8 성남세관
5층 국제원산지정보원

1 3 5 0 3

좋은 점, 개선 사항, 활용 여부 등 기타 의견을 보내주세요.



점선을 따라 자르신 다음 반으로 접어 뒷면에 풀로 붙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접 는 선



풀 칠 하 는 곳



중소기업 활용

수출유망품목 원산지결정기준 해설 핸드북



관세청
Korea Customs Service



국제원산지정보원
Korea Institute of Origin Information